

제418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정기회) (결산심사소위원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9월10일(화)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상정된 안건

-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1
-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1

(10시12분 개의)

○소위원장 구자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2.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소위원장 구자근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부처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법무부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변필건입니다.

○법무부검찰국장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송강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심사에 앞서 저희가 한 장짜리 놓아 드린 것 있습니다. 3권의 심사 대상인데요. 상임위 공통, 예결위 포함해서 420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데 ‘이건 있음’하고 ‘유형 선택’이 62건입니다. 그래서 62건에 대해서 오늘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제 법무부 들어가겠습니다.

소위 책자 자료 3권 47쪽입니다.

47쪽의 연번 2번입니다. 개발도상국 법제정비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공무원 퇴직 후 충원에 따른 공백기간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상임위 의결을 존중해 주시되 특별히 예결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허영 위원 저희 의견을 수용하기보단 정부 측, 법무부 측 입장을 얘기해 주셔야 저희가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토론이 되고 또 의견의 접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 내는 것에 대해서 100% 수용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간략히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3년도 공무원 상용임금 불용액은 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2개월분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ODA에 특화된 통·번역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는데 이직을 하다 보니까 직업적 특성으로 인해서 퇴직 시기를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채용하는데 공고 후의 필기시험, 면접 이런 절차로 인해 평균적으로 2~3개월 충원기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퇴직 후에 다시 새로운 사람을 저희가 채용하기까지 한 2개월 정도 걸리다 보니까 불용액이 600만 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충원 절차가 지연됐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상임위 의결을 존중하여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 그런 정도 수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예, 제도개선으로 하고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대영 같은 페이지 연번 3번입니다.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입니다.

국제투자분쟁 중재에 대한 항소의 인용 가능성이 국제법적으로 매우 희소하다는 점에서 엘리엇 룬스타 메이슨 등 우리나라가 패소한 국제투자분쟁 중재의 항소 유지가 배상금에 대한 지연이자만 더 발생시키는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입니다.

법무부는 우리나라가 배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국제투자분쟁 중재 사건의 항소 계속 여부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시정과 제도개선 두 유형이 있습니다. 둘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정부가 일부 패소한 중재 판정에 대해서 항소 인용 가능성이나 지연이자 부담 등 이것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불복 절차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불복을 할 때 실제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모든 사건을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듣고 또 정부 대리 로펌이라든지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어떤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항소 여부를 심도 있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도개선으로 좀 낮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곽규택입니다.

이게 지금 문구가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법무부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으로 한다면 문구를 어떻게 간략하게 바꾸면 되겠습니까?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 이것은 너무 막연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저희는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해서 항소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할 것’ 이런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선 위원** 제가 하나 여쭙보겠습니다.

ISDS 중재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에 항소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항소에서 승소 인용된 경우들이 거의 전무하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항소해서 결과가 나온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다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용선 위원** 그런데 국제적으로, 물론 드문 소송이기는 합니지만 국제중재재판이기 때문에……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한 4~11% 정도가 영국에서는 인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는 그렇다고 합니다.

○**이용선 위원** 그래서 습관적으로 우리가 국내 재판에서 항소하고 상고하듯이 접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예.

○**이용선 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항소해서 인용돼서 판을 뒤엎을 가능성이 거의 없음이 분명한 것은, 이것은 결론을 빨리 맺는 게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자라든지 소송비용만 늘어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빨리 내릴 수 있도록 하라는 문제 제기니까요. 그런 점을 수용하는 건가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저희가 가급적이면 다 관계 부처 의견을 들어서 항소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겁니다. 그런데 항소를 원점에서 아예 재검토한다는 것은 하지 않는다는 거라서 그 부분은 조금……

○**이용선 위원** 그러니까 개별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예, 맞습니다.

○**이용선 위원** 전반적으로 항소 인용 사례가 적고 압도적으로 10%대에 불과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판단을 조금 정교하게, 정확하게 해서 쓸데없는 이자라든지 비용이 계속 나가도록 하는 것들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니까요.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개선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수용하겠고요.

○**이용선 위원** 그랬을 때 이 표현을 보완할 수 있는 게 뭔지 안을 주시면 좋겠네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예.

○박수민 위원 제 생각에는 이제 관계 부처 의견 들어서……

○소위원장 구자근 박수민 위원입니다.

○박수민 위원 박수민입니다. 죄송합니다.

관계 부처 의견을 들어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갈 것, 이런 정도 하시면 되지 않을까, 뜻은…… 왜냐하면 이제 항소 여부에 대해서 예산 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정책적 결정보다는, 항소 여부는 어차피 되게 고독한 판단 아닙니까? 이거는 결과가 나오는 거라서 담당 관계 부처나 공무원·공직자들도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만 이제 위원님들 견해에서 제가 볼 때 지혜로운 것은 기계적으로라든지 관성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이자 등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오히려 그런 말씀이시니까요. 그 정도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장철민 위원 저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철민입니다.

아까 지침 말씀을 하셔서 지침에 분쟁대응단 같은 것들을 만들게 돼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예, 관계 부처 TF가 있습니다.

○장철민 위원 TF요? 방금 말씀하신 지침상으로는 이름이 정확하게 국제투자분쟁대응단 아니에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예, 대응단 맞아요. 대응단도 있고 밑에 TF도 있습니다.

○장철민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대응단이 지금 운영이 안 되나 보지요, 실장님 잘 모르시는 걸 보니까?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아니요,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철민 위원 최근에 몇 번이나 혹시 논의가 있었습니까? 최근에 운영을 하셔서…… 최근에 회의하신 게 언제예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이?

그냥 직접 실무자가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법무부국제투자분쟁과장 김지언 국제투자분쟁과장입니다.

○장철민 위원 여기에 엘리엇 론스타 메이슨 이렇게 있으니까 대응단이……

그러니까 사실 아까 실장님이 여러 가지 부처 간 협의 이런 얘기 하셨지만 방금 말씀하신 훈령 지침상으로 정확하게 그 안에 관련기관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 그 대응단을 법무부차관님이 지금 단장을 하시게 돼 있나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부처 간 협의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침을 제대로 따르고 있습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이 이러이러한 절차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이런 보고라도 사실 명확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국회에 보고할 수 있는 내용들이 돼야만 신뢰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중앙부처들이 부처 협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라고 해서는 사실 여기에서 지적 주신 위원님들의 의견에 어떻게 보면 전혀 부응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장님은 아까 지침을 설명해 놓고 지침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가지고…… 최근에 언제 회의하셨어요?

○법무부국제투자분쟁과장 김지언 저희가 여러 사건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평균 한 두 번꼴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철민 위원 한 달에 두 번 정도씩 하고 계신 거예요?

○**법무부국제투자분쟁과장 김지언** 예.

○**장철민 위원** 그러면 최근에는 지금 엘리엇이나 이쪽 관련된 이야기들이 대응단에서 논의되고 있는 건가요?

○**법무부국제투자분쟁과장 김지언** 예, 이거 외에도 다른 진행 중인 사건이 많아서 최근에 한 회의는 다른 사건, 다른 ISDS 사건으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장철민 위원** 지금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주시는 ……

○**소위원장 구자근** 장철민 위원님 짧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장철민 위원** 예.

하여튼 제 생각에는 이게 정확하게 사실은 법무부조차도 지금 이 지침에 대해서……

○**소위원장 구자근** 그러면 시정으로 받아들일까요?

○**장철민 위원** 얘기는 하는데 저거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표현만 바뀌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불성실한 태도여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짚고 관련된 보고를 예결위에서 요청을 하는 게 의견을 주신 분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안도걸 위원** 저도 간접적으로 제가 현직에 있을 때 한번 관련해 가지고 회의에 간 적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바도 있고 그런데요. 지금 보면 예를 들어 국제소송이 붙었을 때 당사자는, 우리 정부를 대표하는 것은 법무부가 되지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예, 그렇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렇지만 이 실질적인 사안을 담당하는 부처는 또 따로 있단 말이에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예, 그렇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래서 그 간극이 조금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부처 간의 유기적 협조가 필요한데 이게 굉장히 체계적인 무슨 조직적인 어떤 분담이랄까 협업 체계가 돼야만이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해 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그리고 또 민간 전문가 등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객관적으로 검토해서 판단을 내리는, 최종적인 것은 법무부나 이쪽에서 하겠습니까마는 그러한 상당한 의결권을 갖는 자문위원회랄까 이런 거를 두는 게 저는 굉장히 필요하겠단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담기는 예를 들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허영 위원** 허영입니다, 위원장님.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요.

이거는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와 경제부처, 비경제부처 4일 내내 문제가 제기됐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향후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정부배상책임의 원인에 대한 구상권 청구까지 이어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한 제도개선 문제로 이거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적어도 시정조치까지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정부가 제도개선 차원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의 지적을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약간은 미흡한 처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요. 이 문제는 3번, 4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4번 같이 해서…… 시정이 안 받아들여지면 보류로 해서 추후에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법무부, 시정 받아들이세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48쪽, 연번 4번입니다.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사업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시정요구사항에 첫 번째 동그라미가 있고 두 번째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상임위 제도개선은 법무부가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어제 보건복지부 할 때—이 시정요구사항이 동일합니다—이 사항에 대해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연번 4번은 보류시켜 가지고 보건복지부랑 같이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그래도 되나요?

○전문위원 정대영 예, 어제 보건복지부에서 보류된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알겠습니다.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정대영 49쪽, 연번 5번입니다.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법제 선진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공익신탁제도 활성화가 성과가 부진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최근 공익신탁자문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 대상을 좀, 모금기간 등을 재조정하고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개선하고 기부금품 모집 절차 특례 마련 및 운용 방식을 조금 개선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해서 조속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상임위 의결을 존중하셔서 제도개선으로 낮춰 주시길 바랍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용선 위원 이걸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비싼 홍보 비용이 들었던데요. 공익신탁 1건을 위해서 언론진흥재단에서 전체 위탁 금액보다 거의 2배 이상 되는 비용을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묶어서 해서 홍보·광고 비용이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걸 잘 좀 제도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제도개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50쪽, 연번 7번 법률구조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자체수입이 구조적으로 감소하여 자체수입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가 크므로 여기에 대해서 자체수입 산정의 정확성을 제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저희가 21년도까지는 자체수입의 예결산 간 편차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0월에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라서 임금소송이 급감을 하는 바람에 2022년도와 2023년도 자체수입이 급감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법률구조 지원 대상의 확대 등을 통해서 자체수입 증가가 기대되고 있으므로 예결산 편차는 감소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반영 하셔서 상임위 의결을 존중하여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제가 보기에 주의로 받아들이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제도개선을 얼마나 더 하시렵니까?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주의로 받아들이시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각오를 다지는 게 맞습니다.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주의로 받아들이십시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51쪽, 동일한 법률구조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지출 쪽인데요. 퇴직급여 적립금 전용을 지양하고 생활안정자금 대부 제도를 축소하는 등 재무건전성을 제고하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을 보시면 첫 번째 동그라미에 상임위 시정 내용이 있고 두 번째 동그라미에서는 예결위에서 나온 주의 의견이 있습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의 시정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이견 없고요.

그래서 첫 번째 동그라미하고 두 번째 동그라미에 제가 밑줄 쳐 왔습니다. 약간 차이점만 있고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그라미하고 두 번째 동그라미 중에서, 즉 시정과 주의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공단의 퇴직금 과소 적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무부는 매년 초에 당해연도 예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시에 인건비를 세분화하여 승인은 해왔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규정이 일부 미비해서 공단의 퇴직적립금 전용을 감독을 못 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퇴직적립금의 전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저희가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퇴직적립금의 전용을 제한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인건비 절감 방안을 시행해서 저희가 인건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 생활안정자금 대부 제도도 23년부터는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로 변경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이용선 위원 그러면 시정요구의 첫 번째 동그라미 내용은 다 수용하되……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예, 그렇습니다.

○이용선 위원 그 수위를 주의로 낮춰 달라?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예, 그렇습니다. 내용은 다……

○이용선 위원 내용 전체를 수용한다면 주의로 낮춰도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감사합니다.

○허영 위원 아니,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허영입니다.

퇴직적립금을 위한 보조금을 인건비 상승을 위해 사용을 했습니다.

기재부차관님,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퇴직적립금 보조금을 인건비 상승을 위해 사용하면 나중에 그게 어떤 후과가 있지요? 이게 보통 다른 정부 부처나 기관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저희가 비목 간 전용을 할 때 인건비로 편성된 예산을 다른 데로 돌려쓰는 것은 엄격하게 막고는 있지만……

○허영 위원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정부가 어떤 정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인건비가 어떤 방법으로든 모자라면 사업비에서 인건비로 전용하는 부분은, 이것은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퇴직급여 적립금을 어떤 연유로 인건비로 돌려 썼는지는 저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영 위원 이것은 자체 규정을 지금 마련하고 그런 과정에 있지만 이것은 불법적인 상황이고 징계감입니다. 그것도 퇴직적립금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인건비 상승에 씁니까? 그러면 만약에 고갈되면 지금 들어가는 입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관련된 사안들을 시정, 주의, 시정…… 여당 위원들조차도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 그대로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정하셔 가지고……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더 반성해야 되겠습니다.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예, 더 반성하고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시정을 받아들이십시오.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위원장 구자근 허영 위원님 정확한 지적입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52쪽, 연번 9번입니다.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상황, 격오지 등 일부 배치기관 장기 공석, 육아휴직 등으로 법률홈닥터의 결원이 지속되어 연례적으로 대규모 불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집행 부진을 해소하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이 법률홈닥터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등 때문에 집행이 좀 저조했던 것은 사실이나 최근, 현재 65개 배치기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두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충원이 되었고 그 두 곳도 지금 채용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 이용선입니다.

보면 23년에 불용률이 17%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예, 그렇습니다.

○이용선 위원 코로나 시기로 보면 20년, 21년, 22년까지는 코로나 시기인데 코로나가 끝난 23년에 불용액 비율이 이렇게 높아진 건 왜 그런가요? 코로나 영향으로 봐야 되나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아닙니다. 코로나도 있었지만 저희가 사실 지방근무 기피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법률홈닥터는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지방에서, 저희가 법률적인 서비스를 격오지에서 제공을 하다 보니까 충원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근무 기피 때문에 사실은 휴·퇴직 인원이 21년도, 22년도, 23년도가 거의 21~23명으로 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보충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노력해서 65개 중 2개만 빼고 나머지는 채용했다고 말씀드리고는 접니다.

○이용선 위원 올해 들어와서 그걸 대부분 충원해서 개선했다는 거지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예, 그렇습니다.

○이용선 위원 알겠습니다.

○허영 위원 제도개선으로 하시지요.

○이용선 위원 예,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제도개선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53쪽입니다. 변상금입니다.

동 과목이 과소 계상되고 있고 수납 비율이 저조하므로 예외 없는 징수 결정 및 적극적 징수 하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가 있고 이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이 부분에서 특히 국가가 가해자의 보유 재산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서영교 의원님이 발의하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작업장려금이라든지 근로보상금에 대해서 더 활발한 징수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일선 검찰청에 독려할 예정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 여기 보니까 제도가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은 89억인데 실제 징수는 16억에 17.8%로 돼 있는데 징수한 것을 계상함으로 해서 100%로 되는 이 제도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허위에 가깝도록 잘못 설계돼 있는 것 같은데……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예, 그렇습니다.

○이용선 위원 우선 두 가지, 이 제도 자체는 당연히 바뀌어야 되고, 두 번째 징수수납액을 좀 높일 수 있는 적극적 방안들을 강구할 수 있습니까?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구상권 행사 결정되는 경우 수납 여부와 관련 없이 원칙적으로 징수 결정하도록 개선을 저희가 당연히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수납률을 높이려고 하면 국가가 가해자의 보유 재산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방금 말한 서영교 의원님이 내셨던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개정되어서 저희가 좀 더 수납률을 높이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용선 위원 그 법률에 따르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렇게……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예, 가해자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용선 위원 알겠습니다.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이런 부분은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됐지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예, 논의했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알겠습니다.

○이용선 위원 제도개선으로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제도개선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54쪽, 연번 11번입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사업인데요.

동 사업에 대해서 국선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신속한 초기 지원 등 역할을 확대하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이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가 있고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피해자에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성폭력상담소라든가 해바라기센터 등을 방문하게 되면 거기의 협조 요청에 따라서 필요 시 고소장을 작성해 주고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도 하고 있고, 다만 지원 실적이 조금 저조한데 지원기관에 제도를 적극적으로 좀 더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피해자 국선변호의 주요 지원 대상이 성폭력·아동학대 범죄 피해자기 때문에, 다만 이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사실 2차 피해의 우려가 있는 측면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피해자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제도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제도개선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허영 위원님께서 크게 이해하셨

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55쪽, 연번 14번입니다.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사업입니다.

검사 및 수사인력 교육목적 사업에 특수활동비 배정을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시정과 주의가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예결위하고 상임위 차원에서 특수활동비에 대한 지적이 많았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경찰청, 통일부, 국세청 그다음에 감사원, 방사청 등이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총괄 부분에서 논의하실 건지 아니면 부처별로 논의할 것인지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시정요구 유형이 2개기 때문에 2개의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일단 부처 의견 말씀해 보십시오.

○법무부검찰국장 송강 검찰국장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법사위 상임위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를 해서 올라온 사안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사항 요지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것만 먼저 설명 올리고 다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관련 사업명이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적사항은 왜 교육사업 위주로 편성되어 있느냐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사실은 인권보호 등 검찰업무지원 사항에는 교육사업도 있지만 검사 및 검찰수사관의 교육을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범죄정보자료 수집 활동비, 감찰정보자료 수집 활동비 명목이 별도로 세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사업에 들어간 비용은 특활비가 아니라 이 큰 항목에 있는 범죄정보자료 수집 활동비하고 감찰정보자료 수집 활동비에 들어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법사위에서도 충분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니까 위원님들께서 다 이해를 하셔서 주의로 올라왔던 건데 아마 그런 설명이 이 페이지에 없다 보니까 다시 시정으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사안은 그렇게 위법 부당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상임위 의결을 존중하셔서 주의로 변경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말씀하시지요.

○안도결 위원 안도결입니다.

그러면 지금 범죄정보자료 수집 그리고 감찰자료 활동비 이건 아마 특활비 명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용도로는 딱 이 사업비가 전부입니까?

○법무부검찰국장 송강 예, 맞습니다.

○안도결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하고 교육사업비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교육활동 사업하고는? 2개 같이 묶어서 큰 사업 밑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특수활동비를 편성하는데 큰 비목이 한 대여섯 개 정도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인권보호 등 그 부분 안에 저희가 검찰업무 지원인력 운영, 검찰업무 지원, 인력선발 관리교육 그다음에 말씀하신 감찰활동 강화, 인권감독 강화, 양성평등 강화로 비목이 나뉘어 있습니다.

○안도결 위원 그러니까 별도 세부사업으로 있다 이거지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예, 그렇습니다.

○**안도걸 위원** 큰 항목에 사업명이 있고?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그렇습니다.

○**안도걸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이렇게 하지요. 이걸 제도개선이 상임위하고 다들 이해가 된 것 같은데, 앞으로 특활비 나오면 전체 묶어서 보류하고 저하고 양당 간사 간에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올라온 걸 다시 여기서 재논의하고 계속해서 하는 건 소모적인 논쟁이 될 것 같아서 일단 특활비는 묶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제도개선 해서 넘어간다고……

○**이용선 위원** 아니, 이건 주의를 받겠다고 한 건데.

○**소위원장 구자근** 아, 주의를 받겠다고? 오케이. 이걸 주의 받고 넘어가고 앞으로 나머지 특활비 나오는 것은 전체 보류를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 일괄 협의하는 걸로.

○**전문위원 정대영**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연번 15번입니다. 형사보상 사업인데요.

동 사업은 형사보상금 충당을 위한 과도한 예산의 이·전용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57페이지를 보시면 시정요구사항으로 동그라미가 5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도개선, 두 번째는 주의 또 세 번째는 제도개선·주의, 네 번째는 주의, 다섯 번째는 주의입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동그라미는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동그라미는 선택하시면 되고, 세 번째 동그라미에서는 제도개선과 주의가 있습니다. 이 2개의 시정요구 중에서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법무부검찰국장 송강** 이 사안도 저희 법사위 상임위에서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됐고 설명을 많이 드린 사안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올리면, 이 형사보상금의 지급 원인이 지금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무죄보상이 아니고요 과거사 사건입니다. 소위 말해서 제주4·3사건이라든가 5·18민주화운동 사건, 이 과거사 관련 사건들이 사실은 피해자 보상 같은 경우가 97.4%를 차지하고 있고요. 피고인 보상은 87.3%, 87.3%가 이 과거사 관련 사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무죄 사건의 확정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기 때문에 그 점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그 부분을 제도개선으로 좀 낮춰 달라 하는 요청입니다.

○**이용선 위원** 이용선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예산액 대비 40%로 책정한 것은 무죄 사건이 대부분 과거사 재심 때문에 발생한 건들이 70% 이상이다 보니 예산액 대비 한 40% 정도밖에 집행을 안 하고 있

다 이렇게 설명하시는가요? 현실이 그런가요?

○**법무부검찰국장 송강** 집행이 훨씬 초과된 겁니다.

○**이용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40%밖에 배정을 안 하고……

○**법무부검찰국장 송강** 예, 맞습니다.

○**이용선 위원** 이 이유가 주로 무죄 사건이 예상치 못한 과거사 재심 사건으로 주로 연이어졌기 때문에……

○**법무부검찰국장 송강** 맞습니다.

참고로 간단히 말씀을 올리면 지금 제주지검에는 제주4·3사건 직권재심 수행단이 있습니다, 검사들이 파견돼서 하고 있는. 그래서 계속 저희가 직권으로, 검찰에서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죄가 확정됨으로써 형사보상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20억 정도 추가해서 예산편성을 올리는 해 놓은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충분히 이해는 가네.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잠깐 얘기드리면 아까 재심 사건 비율이 피고인 보상, 사실 무죄를 받은 것은 한 12% 정도밖에 안 되고요. 아까 말한 재심 사건 그게 한 87% 정도가 됩니다. 특히 제주4·3사건이, 특별재심제도가 21년도에 신설되고 그다음에 5·18 보상법 개정에 따라서 그때부터 갑자기 확 는 거기 때문에 실제 편성한 것보다, 저희가 400억 편성해서 568억 집행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지금.

○**허영 위원** 허영입니다.

위원장님, 이것 논의가 길어지면 그러니까 제가 좀 의견을 내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예.

○**허영 위원** 강원도에도 동해안 지역에 어업활동을 하다가 북쪽으로 피랍되어서 각종 다양한 간첩 누명을 썼다가 재심 청구하셔서 가지고 무죄돼서 했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그라미가 57페이지에 보면 5개입니다. 종합적으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도개선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삭제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제도개선으로 하고, 네 번째는 삭제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주의를 제가 좀 드리고자 하는데, 법원에서 이러한 보상에 대한 기록 요청을 하고 회답을 검찰청에서 하게끔 돼 있잖아요?

○**법무부검찰국장 송강** 예, 그렇습니다.

○**허영 위원** 이게 늦어지는 건만 해도 지금 100건 이상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그것 제가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영 위원** 제 설명을 듣고 말씀을 좀 주십시오.

100건 이상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보상이 늦어지면, 수십 년간 그러한 국가의 잘못된 행정과 사법행정을 통해 가지고 피해를 받아 왔는데 보상이 늦어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또 다른 2차 피해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 관련된 당사자와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들은 여하튼 예결위 위원들이 주의를 촉구하는 시정조치를 요구했는데 받아들여 주셨으면,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예, 허영 위원님.

그러니까 첫 번째 세 번째는 제도개선, 두 번째 네 번째 동그라미는 삭제, 마지막은 주의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58쪽, 연번 16번입니다. 검찰청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위법한 정보공개청구 거부로 인한 불필요한 소송비용 및 패소 비용 지출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정요구사항 보시면 상임위 제도개선이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도 상임위 제도 개선입니다. 세 번째 동그라미는 시정요구 유형이 시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의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법무부검찰국장 송강 검찰국장입니다.

최근 3년간 정보공개소송 결과를 보면 2022년도에는 저희가 패소로 소송비용을 지급한 건수가 57건이고 작년에는 40건 그리고 올해는 6월까지 8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보공개소송이 되면 이게 케이스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설정되고 그 기준이 설정되면 그게 전국 청에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정보공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송 건수는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요구 자체가 위법 부당하다기보다는, 그래서 앞으로도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일선 청을 지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정요구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크게 이견은 없는 것 같은데……

○이용선 위원 그런데 최근에 줄어들고 있다지만 23년도에 보면 정보공개 처분판결이 58건이 전부 패소, 그다음에 일부 인용이 44건, 그런데 이행을 안 해서 결국은 9800만 원 정도 패소로 인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정보공개 청구해서 판결이 이루어지면 신속하게 시행을 해야지, 이게 이렇게 계속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허영 위원 제 질의 포함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제가 수정 제안을 하겠습니다.

16번에 관련해서 첫 번째 동그라미는 제도개선, 두 번째 제도개선, 세 번째는 시정을 국회에서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 제도개선보다는, 이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지적사항을 죽 보시면 그렇게 무리하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의를 그냥 받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법무부검찰국장 송강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주의.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61쪽, 연번 21번입니다. 치료감호자수용관리 사업입니다.

2024년 기준 국립법무병원의 의사 정원은 20명이고 현원은 10.6명인데 이 중 정신과는 정원 15명 중 현원이 7.2명으로 정신과 의사의 정원 대비 충원율이 48%에 불과하므로 정신과 의사 추가 충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립법무병원 의사는 민간병원 대비해서 낮은 보수라든지 격오지 근무, 그다음에 정신질환자 치료의 부담 등 이런 이유로 사실은 정신과 전문의 충원율이 50%가 안 됩니다. 사실 그동안 저희가 민간 스카우트로 초빙하거나 퇴직 의사의 시간선택제 채용 등 저희가 여러 가지 의료인력 처우개선을 추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의사 8명의 연봉을 최대 400%까지 인상을 했고 2명 국외연수를 실시해서 인센티브를 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제도개선으로 좀 의결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기재부차관님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63쪽, 연번 1번입니다.

예결위 종합심사에 나온 겁니다. 총괄인데, 검찰청 독립 예산편성 필요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법무부는 국가재정법을 명백히 위반하여 검찰청 예산에 대한 검찰총장의 고유직무를 불법으로 침해한 검찰국장 등 법무부 담당 고위공무원을 징계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는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법무부검찰국장 송강 검찰국장입니다.

이것은 예결위 회의장에서도 많이 의논이 된 사항이어서 위원님들이 잘 아실 내용이어서 간단히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예산을 정부 수립 이래로 법무부에서 편성을 해 온 것은 정부조직법, 국가재정법, 검찰청법 등의 법률에 의한 것입니다. 2006년에 처음 국가재정법이 제정됐는데 그때도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중앙관서의 장에 검찰총장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의 논의를 회의록에 보면 상당히 위원님들 사이에서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중앙관서의 장에 검찰총장을 넣지 않기로 논의가 되셨고요. 그래서 기존 통합편성 방식 유지에 합의를 하셨습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 예산편성 주체를 변경하는 것은 그러한 입법자의 어떤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재부, 검찰과 좀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무부에서 검찰 예산을 그동안 계속 통합 편성해 온 것이고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업무를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를 철회해 주시고 부대의견도 삭제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곽규택 위원** 광규택입니다.

시정요구사항에 있는 그 부분이, 법무부에서 검찰총장의 고유직무를 불법으로 침해했다 이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말씀하셨듯이 국가재정법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있다가 중앙관서의 장에서 검찰총장은 빠져 있기 때문에 검찰의 자체 예산편성권이 없는 것으로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었고.

그리고 지난 21대 때도 이것은 입법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개정안이 발의는 됐다가 폐기된 적이 있지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예, 그렇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래서 이것은 법과 관련된 입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것을 징계로 간다 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선 위원** 이 문제는 법의 해석과 관련돼서 논란이 있는 사안인 만큼 전체 삭제를 여기서 결정하기보다도 우리 예결위원인 주철현 위원이 어쨌든 종합정책질의에서도 그렇게 근거를 충분히 의견 제시하면서 문제 제기를 한 바도 있고 한 만큼 간사 간 협의로 보류해서 넘기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하실 말씀 있어요?

○**허영 위원** 보류하셔서……

○**소위원장 구자근** 보류하기 전에 제가 속기록이나 또 나머지…… 저도 전체 거기서, 주철현 위원님 결산 정책질의에서 받아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의 경우는 진행을 시켰는데, 이게 여야 공수 교대가 되면 늘 같은 사안으로 이 테이블 위에 올라왔던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질적으로는 법률안 개정 사항으로, 아니면 제정 사항으로 이렇게 가야 되고.

그간의 사정들은 우리 여야 위원님들 다 서로 아실 겁니다, 전체적인 사항들은. 그래서 이게 시정요구 유형으로 보면 징계하고 뭐 이렇게 할 사항들은 아니고 방금 이용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료 위원에 대한 의사 표시의 존중의 의미로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해서 보류하는 걸로 해서 일단 그렇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64쪽, 연번 2번 검찰 국외훈련 및 국제형사 협력지원 사업입니다.

검사의 경우 법관과 비교하여 국외훈련비 지급기준 중 학자금 지급한도 및 체재비 월 지급액이 높은 수준이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법무부는 검사의 국외훈련비 지급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법관 등과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개선할 것 하면서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으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이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법무부검찰국장 송강** 지금 저희 검사들의 국외훈련 현지 체재비는 일반행정공무원과 동일하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오히려 그 부분이 좀 낮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데 저희는 지금 일반행정공무원과 동일하게 인사혁신처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검사에 대해서도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39조,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서 학자금의 한도액을 정해서 순수 학비만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검사 같은 경우에는 판사와 달리 실제로 국제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만 하더라도 저희 검찰국에 국제형사과가 있고 또 법무부 국제법무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서 실제로 국제투자분쟁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전 공한 검사들이 법무부에서 그 해당 전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임위에서 이 말씀을 꼭 드렸더니 말씀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시정요구를 철회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도 상임위 의결을 존중하셔서 시정요구 철회를 요청드립니다.

○**곽규택 위원** 곽규택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상임위 예결위에도 올라오고 우리 예결위 전체회의에도 같이 올라왔는데 상임위 예결위에서는 아무런 지적 없이 그냥 지적 철회가 됐다는 건가요?

○**법무부검찰국장 송강** 지적이 있다가 저희가 설명을 드리니까 제외됐습니다.

○**곽규택 위원** 상임위 예결위에서? 법사위 예결위에서?

○**법무부검찰국장 송강**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이용선 위원님.

○**이용선 위원** 내가 하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용선입니다.

지금 검사와 법관의 학자금 지급 금액이 차이가 적지 않게 나지 않습니까? 방금 설명하신 거 보면 학자금대로 집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법무부검찰국장 송강** 맞습니다.

○**이용선 위원** 그런데 법관이 공부하는 분야하고 검사가 공부하는 분야가 다른가요? 학교가 달라서 그래요?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저희 같은 경우에, 법관의 유학 가는 숫자와 저희가 유학 가는 숫자가 다른데 예를 들면 저희가 한 칠십몇 명 정도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위과정으로 훨씬 많은 사람이 갑니다, LLM 과정을. 그렇기 때문에 학자금이 더 비싼 곳을 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용선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

○**곽규택 위원**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법관들의 경우에는 학위과정이 아닌 분들이 많고……

○**법무부검찰국장 송강** 대부분 학위과정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법관들은 대부분 학위과정이 아닌가요?

○**법무부검찰국장 송강** 예.

○**소위원장 구자근** 법관들은 그러면 뭐 특수과정 이렇게 가고 검사들은 석박사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법무부검찰국장 송강** 학위과정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용선 위원** 그런데 그거 좀 이상한데……

○**곽규택 위원** 그러니까 1인당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소위원장 구자근** 이용선 위원님 정리하시고 안도걸 위원님 하시고.

○이용선 위원 그러면 학위과정에 맞게끔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이렇게……

○법무부검찰국장 송강 학위과정에 맞게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많은 수는 아닌데……

○이용선 위원 되고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니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건가요, 지금 법원과 검사의 학자금 지원이?

○법무부검찰국장 송강 지금 법원의 체재비 기준 설정은, 법원이 사실 어떻게 했는지 저희가 알 도리는 없습니다.

○이용선 위원 아니, 체재비도 250불 정도 차이가 나는 것도 좀 이상하지만 학자금도 심하게는 거의 30%가 더 검사 쪽이 많은데 이 각각에 대해서는 전부 해당 학자금의 기준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셨잖아요.

○법무부검찰국장 송강 예, 맞습니다.

○이용선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안도걸 위원님.

○안도걸 위원 지금 이 학자금 금액을 보니까요, 이게 평균치가 아니고 한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도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아마 비슷한 LLM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이수를 한다라고 하면 한도는 좀 맞춰 주는 게 국민들한테 설명이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일반행정공무원은 이게 2만 불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오버하는 경우는 자부담으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봐서는, 하여튼 국민 눈높이에서 봐서는 이게 설명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도 정도는 좀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무부검찰국장 송강 참고로 말씀을 올리면 사실은 미국 학위과정은 저희가 전원 LLM 과정을 수료를 하고 학위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한도를 6만 달러로 하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좀 우수한 검사들, 아이비리그 가는 검사들은 지금 이 6만 달러로 도저히 학자금이 다 충당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찌 보면 이 한도는 최소한으로 해 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게 일반공무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아이비 쪽 가고 하면 굉장히 높잖아요. 5만 불 막 이렇게 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국가예산은 줄 수 있는 한도가 있고 또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2만 불로 딱 맞춰 놓고 그 이상 되는 건 자부담으로 하세요 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보면 약간 형평에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소위원장 구자근 박수민 위원님.

○박수민 위원 박수민입니다.

저는 조금 다른 견해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런 것들을 수평 비교를 해서 기준을 국내 관점으로 보면 그런데 또 해외에 가서 보면 현지에서 일하는 게 좀 다르기도 하고 또 지금 법무부 얘기는, LLM 과정이 좀 비싸지요. 사실은 검사분들은 그걸 가는 게 조금 더 맞습니다. 그리고 판사분들은 LLM 학위라든지 그런 거 없이 그냥 어떤 프로그램 이수하고 오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걸 제가 볼 때는 자율성을 좀 주는 게 법무부 업무나 검찰청 업무가 선진화되고 인력 양성에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저는 조금 유연성을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허영 위원 허영입니다.

기재부차관님, 이게 제가 그냥 수치로 봐서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무부나 검찰청이나 공무원들이시고 또 타 부처, 기재부나 계신 분들도 다 공무원이시고 아이비리그는 꼭 검사, 판사들만 가는 그런 해외, 국외 연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 갈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수치로 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국내에서도 학비가 차이점은 있지만 너무 차등이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시정 내지 분명히 제도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2번하고 그 뒤의 3번하고는 같은 사업이고 3번의 지적사항을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국회가 제대로 된 집행내역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검찰청은 다른 중앙행정기관하고는 달리 이 사업에 대한 지출대장이나 관서운영경비 지급대장 등 집행내역을 검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결산 검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국회는 상임위에서나 아니면 예결위 과정에서 강도 높은 시정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법무부검찰국장 송강 위원님, 지금 후자 말씀하신 것 먼저 말씀 올리면 이게 저희가 상임위 예결위 전에 작성된 문서라서 그런데 지금 65페이지 3번에 있는 사항은 명백한 오기임을 다 자료를 열람을 해 드리고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적 제외로 상임위에서……

○허영 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시정요구사항도 철회한 게 맞고?

○법무부검찰국장 송강 맞습니다.

○허영 위원 그다음에 자료를 열람했습니까?

○법무부검찰국장 송강 자료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허영 위원 제출했습니까, 문서 형태로?

○법무부검찰국장 송강 열람을 시켜 드렸습니다.

○허영 위원 왜 열람입니까?

○법무부검찰국장 송강 세부내역 중에 저희가 볼 때는 기밀성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지적하신 위원님 의원실에 가서……

○허영 위원 모든 국외훈련비하고 관서운영비가 다 기밀성이 있는 자료입니까?

○법무부검찰국장 송강 그게 자료 자체가 한꺼번에 돼 있다 보니까……

○허영 위원 그러면 그걸 저희 예결위에서 보기 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이 자료에 상임위에서 철회된 것에 대한 명기가 안 됐는지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철민 위원 장철민입니다.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사실 좀 놀란 게요, 왜 검찰은 당연히 LLM을 다 가야 되는 거예요?

○법무부검찰국장 송강 다 가지는 않습니다.

○장철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기준 때문에……

○법무부검찰국장 송강 그중에 우수한 성적이 있는 검사들만 가고 있습니다.

○장철민 위원 예를 들면 검사 중에 해외 유학을 가시는, 국외 연수를 가시는 분 중에 극히 일부만 6만 불이 적용되는 거예요?

○법무부검찰국장 송강 예, 맞습니다.

○장철민 위원 몇 명이 적용돼요, 그중에? 아까 70명 정도 가신다고 했는데 그중에 몇 명이 이 한도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법무부검찰국장 송강 12명 정도 됩니다.

○장철민 위원 70명 중에 12명?

○법무부검찰국장 송강 예, 맞습니다.

○장철민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한도가 얼마예요?

○법무부검찰국장 송강 나머지는 체재비만 받고 있습니다.

○장철민 위원 나머지는 체재비만 받고 학비 지원까지 받는 거는 12명?

○법무부검찰국장 송강 예, 맞습니다.

○장철민 위원 그러면 학비 지원 12명은 6만 불인 거고 그 나머지 분들은 학자금이 아예 없는 거고, 한도가?

○법무부검찰국장 송강 예.

○장철민 위원 그러면 법관이나 일반 공무원들도 기준이 그런 식인가요? 한 5분의 1 정도……

○안도걸 위원 법관은 5만 그리고 일반 공무원은 2만.

○장철민 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70명이 국외 훈련 대상이 되면 비율상 그중에 한 20% 정도만 학자금 지원까지 받는 그런 방식인가요?

○법무부검찰국장 송강 위원님, 자꾸 법원을 말씀하셔서 그런데 법원하고 저희하고 차이점을 간략히 설명을 올리면 저희는 LLM을 받고 오는 검사가 한 기수에 진짜 소수입니다. 극소수인데 그 검사들은 대개는 법무부나 대검의 국제관계업무에 종사를 하게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그 여성 과장도 사실은 하버드에서 LLM을 하고 지금 ISDS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매번 왜 민간 전문가를 데려와서 일을 하지 않느냐 하는데 저 정도의 어떠한 경력과 경륜을 갖춘 사람을 데려오려면 지금 저희 월급 수준으로는 모시고 올 수 있는 민간 전문가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국가 세금이 많이 나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쓰임새를 보면 국가가 굉장히 가성비 있게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허영 위원 허영입니다.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기재부차관님, 이거는 전반적으로, 이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면 여러 다른 부처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를 분명히 느끼고 있는 것이 거든요. 판사님들이나 다른 부처 공무원님들 다 조금은 더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문제의식이 좀 있고요. 이 부분들을 억지로 하향 평준화하자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

까? 그렇게 소상하게 설명할 필요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이 분야에 있어서 국외훈련비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는 조금 더 차이를 줄일 필요성이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합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허영 간사님 의견에 저희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여기 검사, 법관, 공무원은 사실상 총괄하는 파트에서 기관장의 재량으로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행정처에서 법관의 한도를 5만 불로 정했고 그다음에 법무부에서 검찰을 6만 불로 정했고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인사처에서 2만 불로 정했는데 이거를 한 기관을 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다 같이, 행정부 같은 경우에도 2만 불이 지금 너무 적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예산 상황도 고려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도 부분이니까요.

○소위원장 구자근 예, 알겠습니다.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단순 비교해서 보는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회사무처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들, 국회행정직이나 국가직에 있는 행정직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걸 뭐 단순 비교해서 어느 곳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분명히 이분들도 밖에 나가서 역할을 하고 안에 들어와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 더 큰 봉사를 하는 충분한 긍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허영 간사님 말씀 보태서 또 기재부차관님께서도 큰 틀에서 한 번 더 담아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단 보류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용선 위원 형평성에 맞게 제도개선을 하는 걸 전제로 해서 넘어가시지요.

○소위원장 구자근 어때요?

○허영 위원 보류하시지요.

저희가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선 위원 보류?

○허영 위원 저희 예결위에 자료제출을 해 주세요, 열람을 시켜 주시든지.

○소위원장 구자근 상임위에서 그랬으니까 열람밖에 안 되겠는데.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하여튼 저희가 적극적으로 열람해서 오해가 없으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허영 간사님 열람시켜 주세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당연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그게 아마 특활비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기밀성하고……

○소위원장 구자근 그렇지.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예, 그렇습니다. 검찰예산 지출대장이라는 게, 지금 지적된 오기라고 하는 항목이 국제 형사사법공조, 국외 도피 범죄수익 환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수사와 공소제기나 어떤 범죄수익하고 이런 것들이 포함돼……

○소위원장 구자근 관례대로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상임위에서 했던 것들도 있을 거고, 그걸 넘어서서 다 보여 주자 이런 것들은 아니니까 충분히 위원님한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세요.

○법무부기획조정실장 변필건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다음 넘어갑시다.

○전문위원 정대영 마쳤습니다, 법무부는.

○소위원장 구자근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법무부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법제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제처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차장 김창범 법제처 차장 김창범입니다.

○법제처기획조정관 최영찬 법제처 기획조정관 최영찬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법제처는 이의가 없습니다.

○허영 위원 좋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법제처 관계관들께서 나가셔도 좋습니다.

감사원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원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감사원 기획조정실장 황해식입니다.

○감사원기획담당관 이지웅 감사원 기획담당관 이지웅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페이지 88쪽, 연번 1번입니다. 적극행정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재심의 청구 처리기간을 단축하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요구 유형이 시정과 제도개선 두 유형이 있습니다. 이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이 내용에 대해서 법사위원회에서 시정과 제도개선에 대해서 선택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좀 더 강력한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시정을 선택을 했고요. 저희도 시정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시정으로 수용.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89쪽입니다. 연번 2번, 전산운영경비사업입니다.

공정한 경쟁입찰 환경을 제고하라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시정요구 유형이 시정과 제도개선 두 유형이 있습니다.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이 부분은 시정과 제도개선 중에서 예결위에서 제시해 주신 시정으로 선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시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안도결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하나 여쭙볼 게 있습니다.

아마 감사원에서도 이게 좀 위법 부당성이라 할까요, 이런 여지가 있다고 자체 판단하신 것 같은데 가장 공정하게 이런 부분을 처리하셨어야 할 감사원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실제적인 사실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저희가 아까 시정으로 말씀드린 부분은 통상적으로 시정요구 유형이 시정이 좀 제도개선보다……

○안도결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 사항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 내부의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시스템을 운영을 하는데 매년 유지보수를 하는 계약이 반복적으로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그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지속적으로 하던 업체들이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진행을 해 왔었던 측면이 있고요.

제가 아까 시정으로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 저희는 제도개선으로 하고 싶지만 사실은 저희가 이거를 업무적으로 어떤 체도를 새로 만들고 해서 될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계약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더 신중하고 잘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시정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도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단독 수의계약 형태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실질적인 경쟁입찰이 되도록 여건을 조성하시겠다 이런 취지인 거지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그거는 조금 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용선 위원 이용선입니다.

아니, 그런데 답변을 보면 뭘 시정하겠다는지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형식은 경쟁입찰인데 계속 단독으로 돼서 수의계약식으로 관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한 건데 경쟁입찰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까?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경쟁입찰을 하려면 사실은 계약이, 저희가 경쟁을 하더라도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를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단순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런 경쟁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으면 좀 애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지적을 하신 취지는 경쟁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인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쓰겠다라는 맥락이고요. 저희가 무슨 위법하게 계약을 운영하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용선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시정하겠다는 내용이 없지 않냐는 거지요. 뭘 시정하시겠다는 건지, 신경을 쓴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허영 위원 허영입니다.

차관님, 8억에서 10억을 넘어서 시스템을 종합하면 15억 이상 금액이 될 텐데요. 이것이 물론 경쟁입찰을 통해서 기회를 주지만 단독 응찰되어서 매번 수의계약으로 된다 여기에 위법사항이 없습니까, 국가계약에 관한 법률상?

기재부차관님, 위법사항이 없습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이거는 저희가 내용을 봐야 알 것 같은데요. 이 유지보수 계약에서 계속 입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단일 업체가 응찰을 해서 수의계약을……

○허영 위원 제가 봐서는 감사원의 저런 태도 때문에 계속 단독입찰을 하는 겁니다. 감사원은 심각성을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국회가 시정조치 결의를 했는데 이게 단순히 노력해라 이 정도 요구 수준으로밖에 안 들립니까?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위원님, 제가 잠깐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영 위원 감사원은 무법지대입니까? 왜 논란을 그렇게 만드세요? 감사원은 무법지대예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위원님.

○허영 위원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제가 조금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이 부분은 경쟁입찰로 발주를 했는데 이게 유찰이 되니까 할 수 없이, 유찰이 되고 그 이후에 또 유찰이 반복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했던 건인데 저희가 시정 개선하겠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취지대로 그러면 지금 입찰 제안 요청을 하고 입찰공고를 할 때에 이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들이 좀 더 알 수 있도록 많은 정보와 이런 것들을 담아서 적극적으로 입찰공고를 해라 이런 취지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개선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 이후에 사실 업체가 입찰을, 몇 개 업체가 투찰을 할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러니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개선을 할 텐데 미래는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개선하겠다, 시정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고.

제가 제도개선을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가 입찰을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국가계약법령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라기보다는 입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적극성 있게 입찰에 대한 정보를 확대하고 그런 부분들을 하겠다는 맥락입니다.

○허영 위원 참 위험한 인식을 가지고 계시네.

○이용선 위원 지금 수의계약이 몇 년째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해당 업체하고의 수의계약이, 감사원 계약이 지금 몇 년째 진행되고 있는지……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제가 지금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 하는데 좀 시간은 됐습니다.

○이용선 위원 그러니까 수년째 계속 이 한 업체하고만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예, 그렇습니다.

○이용선 위원 그런데 경쟁입찰이라는 것은 예산도 절감하지만 한편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그렇습니다.

○이용선 위원 그래서 경쟁입찰제도를 도입하는 건데 사실상 경쟁입찰이 되지 않도록 지금 공고라든지 이런 조건들이 잘못돼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을 감사원에서 적극적으로 내부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방금 시정조치를 수용하겠다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그것은 저희가……

○이용선 위원 그냥 신경쓰겠다 이런 식의 태도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소위원장 구자근 제가 정리할게요.

이용선 위원님, 정리합니다.

○허영 위원 허영입니다.

이게 지적사항을 보면 감사원의 감사 업무가 얼마나 비밀스러운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이런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제안요청서라는 것을 처음에 홈페이지상에 공고를 하고 그 제안요청서에 따라서 업체가 입찰을 합니다.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도 그렇고 유지보수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제안요청서에는 업무 시스템—여기서 얘기하는 감사자료분석시스템, 업무포털시스템, 공공감사정보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구성도와 업무 흐름도 이런 것들을 공개해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구축을 하겠다, 아니면 그 구축된 시스템을 어떤 시스템 기반 내에서 운영, 유지보수를 하겠다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업체가 보고 제안요청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감사원은 특이해요. 그런 것이 제안요청서상에 다 블라인드 처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 업무를 알고 제안요청을 하겠습니까?

공개된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이게 내부 시스템도 있지만. 그것을 상세적으로 RFP라고 하는 제안요청서에 공개를 해야 여러 경쟁업체들이 그걸 보고 기술 경쟁력이나 운영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안요청을 해 가지고 경쟁입찰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아닙니다. 맞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마무리하시지요.

○장철민 위원 장철민입니다.

사실관계 하나만 여쭙볼게요.

보니까 차세대 OASYS 구축 사업을 올해 또 하고 계시네요? 여기에는 지금 몇 개 업체 입찰했어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그것은 최근에 입찰을 해서 이제 사업자를 선정……

○소위원장 구자근 뒤에 계신 분들이 혹시 답변할 수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3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했습니다.

○이용선 위원 거기는 3개?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3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해서 최근에 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장철민 위원** 그 과정에 대한 보고를 조금…… 거기는 다른 업체인가요, 원래 하시던 데인가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그것은 다른 사업입니다.

○**장철민 위원** 아예 다른 사업이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다른 사업이고 다른 업체입니다.

○**장철민 위원** 일단 시정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구체적인 사업에서 어떤 식으로 뭐가 바뀌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 어떤 방식의 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가 이해가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여쭙보는 거거든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그건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장철민 위원** 일단 앞으로 협의를 하실 것 같기는 한데 그 관련 내용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감사원에서 나오신 감사원 관계자분, 이 내용적 측면에서 보면 누가 봐도 이게 정상적이진 않지 않습니까? 물론 국가계약법에 따라 가지고 정상적으로 입찰 내고 응찰하고 낙찰받고 다 했겠지만, 과정은 거쳤겠지만 실질적으로 단독이 수행하는, 단독이 몇 년간 계속했다라고 치면……

이것은 다른 사항, 아까 답변하실 때 다음 입찰에서는 확실하게 제도를 바꾼다든지 안 그러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든지 저희들 국회에서 주는 주문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수용을 하시면 되는데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다음 또 이 업체가 들어오면 감사원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 업체가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하실 말씀은 많으시겠지만 보편타당하게 보면 그렇지 않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그래서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강한 시정을 요구할게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이상입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92쪽, 연번 1번 총괄입니다.

검찰청 예산편성 및 결산 관련한 감사원의 국가재정법 위반 방조 관련해서 징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은 이견이 있고요.

아까 법무부에서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이 부분은 아까 법무부 논의 시에도 법무부의 의견 나왔듯이 국가재정법 제정 과정에서 많은 입법적인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현행법상 만드시 별도로 검찰 소관 예산을 따로 편성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지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보더라도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찰 소관 예산의 편성,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철회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이용선 위원 이 건도 감사원의 직무유기나 또 위법에 대해 적극 방조했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만 일단 이 문제는 아까 건과 같이 연계돼 있는 만큼 간사 간 협의로 넘기는 걸로 보류하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이게 검찰청하고 감사원 지금 이 지점하고는 좀 사항은 다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위법한 사항이나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감사원 감사를 안 해서, 아니면 들여다볼 사항이 아니라서 해태한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법상으로 당연히 그런 사항이 아닌데 억지로 감사원보고 감사를 진행시키라고 하든지 또 감사를 해야 된다면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그런 거니까 일단은 이 부분은 간사 간 협의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그 뜻은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안도결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한 가지만 체크하겠습니다.

91페이지, 연례적 세수 부족에 대한 감사원의 검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감사원은 지금 동의를 하신 사항이지요?

○감사원기획조정실장 황해식 예, 이것 저희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있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매년 결산검사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조금 더 깊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였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의결이 된 내용입니다.

○안도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여기 속기하시는 분이 힘이 듭니다. 안도결 위원님, 앞으로 미리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도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를 몰라서……

속기하시는 분, 알아서 조금……

○전문위원 정대영 91페이지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아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서……

감사원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보류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이재승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기획조정관 이형석 기획조정관 이형석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101쪽, 연번 2번입니다.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공판활동지원, 이 두 사업인데요.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위원회 개최 실적을 제고하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만 시정요구 유형이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인데 이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공수처는 수사 관련 위원회 개최 실적 제고 필요성과 관련하여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 제도개선에서 제도개선으로 요청드립니다.

2023년도 위원회 개최를 위한 안건이 계획 대비 적어 위원회 운영 실적 및 예산집행을 이 저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수처는 2023년 회의 실적 등을 고려하여 2024년 위원회 운영 예산을 감액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앞으로 집행 실적 및 회의 수요를 감안하여 적절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운영하여 집행을 제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만 동일 지적 사안에 대해 상임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제도개선으로 의결하였으며 예결위도 동일한 시정 유형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절실하게 말씀하시네요.

○이용선 위원 제도개선으로 하시지요.

○소위원장 구자근 예,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이상입니다.

○박수민 위원 제가 한 건만……

○소위원장 구자근 박수민 위원님.

○박수민 위원 부대의견으로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수용하시는 거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예.

○박수민 위원 그런데 이것을 부대의견에 아마 첨가하실 의견이 예결위 최형두 위원에 있으실 것 같으니까 보류로 좀 해 주십시오.

○허영 위원 부대의견은 나중에 별도로……

○소위원장 구자근 그러면 그때 다시 본인이 대표로 앉아 갖고 하면 되겠네요.

○박수민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관계관계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기획조정실장 하정수 헌법재판소 기획조정실장 하정수입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기획재정국장 최혁 저는 기획재정국장 최혁입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재정기획과장 박재은 재정기획과장 박재은입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재정기획과 김성훈 결산 담당 김성훈 사무관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자리해 주십시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들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111페이지 연번 2번입니다. 재판활동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헌법재판의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이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기획조정실장 하정수 헌법재판소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우리 재판소는 시정의 유형을 시정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건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당국에서 매년 협조해 주셔서 연구관 인력을 확충하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연구부 조직을 재편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건 처리기간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접수되는 사건 수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고 더불어서 최근에 법조일원화에 따라서 법원에서 경력 법관을 채용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숙련된 연구 인력 등의 이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좀 감안하셔서 저희 재판소가 바로 노력한다고 해서 즉시 시정되기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 조치 수준을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선?

(「예」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112쪽, 연번 3번입니다. 본부기본경비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구매 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이 시정과 제도개선 두 유형이 있는데 이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기획조정실장 하정수 저희 재판소로서는 고의적으로 두 번 분할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중소기업자의 육성을 위한 관계 법령에 충실해서 업무를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이용선 위원 제도개선 동의합니다.

이건 법에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기획조정실장 하정수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 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대법원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법원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배형원입니다.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 윤성식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윤성식입니다.

○법원행정처예산담당관실 안정웅 결산 사무관 안정웅입니다.

○법원행정처예산담당관실 조재호 결산 행정관 조재호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앉아 주십시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129페이지입니다. 연번 1번, 형사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하고 이월액이 많음에 따라서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고 이 두 가지 유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대법원에서는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유는 저희가 이 과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더 이상 과업변경이 되지 않도록 하고 변경된 과업기간 내에 형사전자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혹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제도개선」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130쪽입니다.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인데 동 사업에 대해서 과업변경 분쟁 및 사업 지연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이 주의와 제도개선 두 유형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이 또한 저희 기관에서는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사업자와 협의하고 소통해서 2024년 하반기까지 통합 테스트와 일부 법원에 대한 시험운영 단계를 거쳐서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이 2025년 상반기에 오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 주십시오.

이용선 위원님.

○이용선 위원 이용선입니다.

연말까지는 개통에 차질이 없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저희가 차세대소송시스템은 내년 1월 구정에 맞춰서 오픈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오픈을 하려면 시스템이 중간에 멈춰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사용하지 않는 기간을 이용해서 오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픈 기간을 내년 1월 구정에 맞춰서 오픈할 예정입니다.

○이용선 위원 준비까지 별문제 없이 잘되고 있다는 거지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현재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용선 위원 제도개선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제도개선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대영 131쪽, 연번 3번 재판일반경비지원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형사보상청구 시 결정 기한인 6개월을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결정 기한 준수율 등에 대한 자료도 관리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시정과 제도개선 두 유형이 있는데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이 또한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에서 제도개선으로 요청드리지는 바랍니다.

대법원에서는 형사보상 결정기한 준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원인별로 사례를 관리하고 형사보상청구인이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각급 법원에 안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상임위원 법사위에서 이 시정요구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한 점도 참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위원 허영입니다.

앞서 법무부 검찰청 관련해서도 이 문제가 동일하게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납북어부 귀환 사건이라든지 또 4.3사건이라든지 기타 국가 폭력이나 또 국가의 잘못에 의해서 수십 년간 이런 억울한 피해와 누명을 쓰고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최종적으로 보상이 다 이루어져야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또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국가로부터 위로받을 수 있는 종결적인 어떤 처분으로서의 성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누명의 피해기간들을 조속하게 보상받기 위해서라도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위원님의 지적 취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형사보상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급 법원에 좀 더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 위원 제도개선을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형사보상청구 관련 제도 보완에 관한 것이므로 시정요구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해도 될 듯합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133쪽, 법률구조단체 사업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정산 및 검증 업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시정요구 유형이 시정과 주의 두 유형이 있습니다.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이 또한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과 주의 중에서 주의로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보조사업자인 법률구조공단에 대한 보조금 정산 및 검증 업무를 작성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향후 법률구조공단이 작성지침의 양식에 의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관리하고 보고서 검증기관인 회계법인의 검증 업무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해서 보조금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검찰청도 법률구조공단하고 연결되지 싶은데 다른 저기 없으면 주의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철민 위원 그런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장철민입니다.

검증 책임이 있었던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사항도 따로 있나요? 이 내용에 보면 작성지침 위반에도 불구하고 적정 의견을 제시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를 하셨나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회계법인에 대한 검증 작업이 약간 부실하다는 지적을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변경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철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후에 어떻게 하는 제도개선 사항 말고 이렇게 지침 위반 문제를 만든 이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를 하시는 게 있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보완해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장철민 위원** 일을 잘못했든지 뭔가 위법 사항이 있든지 이 부분은 정확히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 같길래, 하여튼 그것은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검증기관인 법률구조공단에서 담당하는 업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답변 정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철민 위원** 예.

○**허영 위원** 위원장님, 4번도 제도개선 사항인데 안 하고 넘어가서 전문위원 설명과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4번은 첫 번째 동그라미 시정 및 제도개선이고, 두 번째 동그라미는 예결위에서 지적하신 시정인데 이것을 대법원이 다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허영 위원** 예.

○**소위원장 구자근** 장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주의로 하고.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대영** 134쪽입니다. 연번 6번, 소송구조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시정과 제도개선 두 유형이 있고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과 제도개선 중에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대법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대인에 대한 개인 조사 절차에서 임차인의 권리가 적절하게 보호되지 못하는 사례와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위원** 이것은 제도개선 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제도개선 사항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대영** 135쪽입니다. 법원보관금 사업입니다.

법원보관금 잔액이 2조 63억에 달하고 있으므로 세입예산에 편입할 경우 상당한 금액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이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고 2개의 유형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와 제도개선 중에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우선 법원보관금 업무는 공탁금 업무와 비교해서 예치기간이 짧고 소액거래 비중이 많은 반면에 거래 건수는 많아서 업무원가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탁금 운용수익에 비해서 그 운용수익이 크지 않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과 관련해서 대법원에서는 올해 4월에 공탁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해서 1차 논의를 했었는데 위원들 간에 이견이 있어서 속행이 됐고 11월에 이 논의를 다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의 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그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이용선 위원 제도개선이 맞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허영 위원 잠깐만요.

허영입니다.

운용수익금이 공탁법에 따라서 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 회수되고 있고 이게 보관은행에 귀속돼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건데, 이 보관금은 사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사용처요?

○허영 위원 예.

계속해서 이렇게 보관만 합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아니요, 보관금을 징수하게 되면 은행에 예치를 해서 거기서 운용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허영 위원 그러면 운용수익은 어떻게 쓰게 됩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 반영이 돼서요.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이라고 한다면 국선번호랄지 아니면 증인지원 사업이랄지 법원의 재판 운영에 필요한 기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허영 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상금으로는 활용하지 못하게끔 돼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보상금은 어떤 보상금……

○허영 위원 납북 귀환 어부라든지 4·3사건에 무죄가 난 경우에 있어서의 형사보상금.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형사보상금에 대한 결정은 법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집행은 회계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영 위원 회계가 다른데…… 저는 형사보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것이 형사보상금에 대한 국가보조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도 들은 바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저희가 지적받은 사항은 법관들이 형사보상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억울하게 무죄받은 분들에 대해서 신속한 권리구제 절차를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라는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결정을 하겠다는 취지고요.

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집행 부분은 대법원 소관은 아닌 것 같아서, 법무부에서 담당하는 부분이라……

○허영 위원 그것은 또 법무부 담당이군요.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저희는 결정만 하고 집행은 법무부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영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박수민 위원님.

○박수민 위원 박수민입니다.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팩트가 운용수익금이 지금은 법원을 대신하여 보관하는 보관은행에 귀속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맞나요?

○장철민 위원 이것은 좀 말이 안 되는……

○박수민 위원 예, 그래서 지적사항이 이것은 제도개선 사항은 맞아 보이고, 팩트 체크를 좀 하고.

그러면 이것은 신속하게, 이번에 아까 제도개선 그 절차에 따라서 결정이 나면…… 단기보관금이지만 평잔의 개념도 있고 수익은 분명히 나는데 보관은행으로 귀속됐다는 것은 그동안은 좀 방치된 것 같고, 이번에 확실히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저희 대법원 산하에 공탁금관리위원회라는 협의체가 있어서요 주요 쟁점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느끼고 1차 회의를 했습니다만 부처 간의 이견도 있고 위원들 사이의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지적해 주신 점 반영을 해서 2차 회의 때 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대영 마지막으로 136쪽, 연번 8번입니다. 법관 등 연수 및 국제협력 사업입니다.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지출을 지양하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주의와 제도개선 두 유형이 있고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와 제도개선 중에 제도개선으로 해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예산집행이라는 지적을 반영해서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한 점도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제가 보기에 제도개선으로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비단 대법원 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검찰청도 그렇고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인데, 사업의 취지에 맞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맞게 지출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주의로 받아들이시고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 반영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적합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주의를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그리고 연번 9번 지금 올라옵니까?

○전문위원 정대영 8번까지 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끝났지요.

그러면 9번 관련해서 제가 시정 요구했는데 이견 일단은 보류를 하겠습니다. 보류를 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서 저한테 따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 다 끝났습니까?

○전문위원 정대영 예,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3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구자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김종문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사무총장 장영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장영현입니다.

○국무조정실총무기획관 손동균 국무조정실 총무기획관 손동균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영지원본부장 한영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경영지원본부장 한영민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소위 자료 3권입니다.

178쪽, 연번 1번 조세심판원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최근 5년간의 평균 사건처리일수를 살펴보면 2021년도 196일, 2022년도 234일, 2023년도 172일 등 법정처리기한 90일을 크게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 법정처리기한을 준수하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종문 시정요구 내용에 동의합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제도개선으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세심판원에서 234일에서 172일로 줄이려고 계속 매 단계마다 2~3일씩 줄여 가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감

안해서 제도개선으로 지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장철민 위원 장철민입니다.

상임위에서는 왜 주의로 받으셨을까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종문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게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게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주의로 하셨습니다.

○장철민 위원 지금 제도개선으로 요청을 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제도개선 사항 같은 것들이 있는지를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정말로 상임위에서조차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어서 단순한 제도개선으로 충분치 않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종문 처리 기한을 단축하기 위해서 사건을 접수한 이후에 사건 조사, 심판관회의 결정서 작성, 관계부처 의견 조회, 이 모든 과정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시간을 당기면서 하고 있고 우선은 인력을 조금 보충하고 있습니다. 상임심판관들은 8명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밑에 실무 검토하는 인력들을 계속해서 충원해 가면서 그리고 운영을 최대한 빨리 판단할 수 있도록 해 가면서 사건처리기한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박수민입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무환경이 달라지면서 소송 불복 건수가 늘어나고 분쟁이 심해져서 업무 병목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도개선 사안은 제가 보기에 맞는다고. 그런데 총리실에서 심판원 일로 미루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고 이 병목 해소될 수 있도록, 이거 굉장히 병목이 심하거든요. 현장에 심합니다. 그러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종문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182쪽입니다. 연번 5번, 인권보호관 지원 사업입니다.

인권보호관을 보좌하는 전문임기제 충원이 되고 있지 않으므로 충원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과 제도개선 두 유형이 있고 이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종문 시정요구 내용에 동의합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시정보다는 제도개선으로 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 사안은 2023년 9월 달에 제도개선을 해서 전문임기제 나급 공직자를 이미 채용을 한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제도개선이 되었다는 건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종문 예, 그렇습니다.

○이용선 위원 충원이 됐습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종문 예, 충원했습니다.

원래는 변호사 자격만으로 하니까 세종으로 오고 비송무 사건에 대한 인기가 좀 떨어져서 지원자가 없어서 계속 여섯 차례 무산됐다가 그다음에 학위, 그러니까 경력 요건을 추가하는 걸로 바뀌서 채용 공고를 냈고 그다음에 전문임기제 나급 공직자를 채용을 하였습니다.

○이용선 위원 충원이 완료됐으면 제도개선 받아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구자근 제도개선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183쪽, 연번 6번입니다.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강화 사업인데요.

시민사회위원회가 관련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위원회 운영 공백이 길어짐에 대해서 시민사회위원회 필요성 재검토하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시정과 주의 두 가지가 있고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부처 의견 주십시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종문 시정요구 내용에 동의합니다.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보다는 주의로 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용선 위원 제가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예.

○이용선 위원 이용선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아마 대통령실 방침으로 시민사회위원회가 폐지된 것, 훈령도 폐지되고 기구도 폐지된 걸로 아는데 지금 그런 상태에서 소통 관련된 예산 사용을 적극적으로 보완해서 추진하겠다는 건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종문 지금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시민사회위원회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내부 검토와 외부 의견을 주로 들으면서 검토했을 때 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소통하기보다는 시민사회와 직접 소통을 하는 게, 현장 목소리를 더 신속하게 반영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25년도에는 위원회 운영을 추진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통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용선 위원 위원회 자체는 이미 제도도, 기구도 지금 없어졌지 않습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종문 예, 현재 없습니다.

○이용선 위원 그러니 그 틀로 할 수는 없을 거고.

그러니까 단체들과 직접 사안별 접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소통을 강화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종문 예, 그렇습니다.

○장철민 위원 장철민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사실은 재작년까지 시민사회위원회가 존재할 때는 이 위원회 운영하거나 위원회에서 어떤 사업들을 할 때 관련 예산이 활용됐을 텐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아예 재구성하지 않겠다, 다 직접 소통하겠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 아닌가요? 이 관련 사업 전체를 다 바꾸시는 건가요, 이 예산 자체를 아예 바꾸지 않고?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종문 시민사회위원회 운영 예산 자체는 25년 예산 요구부터는 안 하기로 했고요. 그 대신에 시민사회를 만나고 간담회를 하고 직접 연수하고 하는 사업들은 별도 사업 항목으로 뽑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장철민 위원 그러면 이 전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국회·정당 및 시민사회 등과의 소통 강화 이 예산 자체가 2025년도에는 없어지는 건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종문 예, 시민사회위원회 운영예산이 25년도에는 없어집니다.

○박수민 위원 주의로 해요.

○장철민 위원 안 하는데 주의라는 게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허영 위원 주의로 하고 넘어가시지요.

○소위원장 구자근 예, 주의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184쪽, 연번 7번입니다. 국무조정실 기본경비와 국무총리비서실 기본경비에 대한 지적입니다.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의 국무총리 보좌가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시정 요구사항을 보시면 두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요.

첫 번째 동그라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향후 2023년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과 같은 재난의 방지를 위하여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를 조정할 것,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종문 예결위원님들 시정요구사항으로 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23년도에 여러 가지 사회적 재난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총리실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차원에서 상임위에서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를 조정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는 정책의 조정, 사회위험·갈등 관리 등에 있어 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주의할 것이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결과에 대해서는 무한책임을 가집니다. 여러 가지 이런 위험요소들을 예방하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습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 더 열심히 현안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를 업무추진비 조정과 연계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을 오히려 위축시킬 우려도 있고, 따끔하게 지적해 주시는 것은 받고 반성하고 고쳐 나가겠지만 이것을 직원들의 활동비와 연계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하다 싶어서 예결위원님들 지적사항으로 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바입니다.

○이용선 위원 두 번째 동그라미 시정조치로 해 달라는 요청사항이구먼요.

○허영 위원 허영입니다.

차장님, 시민사회위원회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이 업무를 원활

하게 하고 때로는 소통이 필요한 곳에 소통하기 위한 예산 소요가 있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다양한 업무추진이 필요한 사항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종문 예.

○허영 위원 또 불요불급하게 사회적 재난이나 국무총리실로서 전체 부처에 그런 큰 재난이나 사건사고가 있을 경우에 원활한 부처 간의 업무 조율 이런 것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경비 아니겠습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종문 예.

○허영 위원 그런데 앞서 시민사회위원회 그리고 저희가 보기에 있어서는 어떤 큰 사회적 논란이 있고 그 책임 규명에 있어서 논란이 되는 사건에 있어서 국무총리실이 대하는 자세가 조금은 형평성에 어긋난 측면들이 있다고 봐요.

시민사회도 물론 국정철학에 있어서 그것을 폐지하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또 시민사회와의 소통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의 필요성들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종문 예, 그렇습니다.

○허영 위원 국회가 지적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업무추진비를 형평성 있게, 균형성 있게 제대로 써라 이런 지적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종문 예.

○허영 위원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지적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문구를 조정해서 예결위에서 지적하는 방향 차원에서 수용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임위가 애초 지적한 그런 업무추진비의 제대로 된 사용 부분들에 있어서는 유념하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종문 예, 간사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민 위원 장철민입니다.

구체적인 사업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의 변경은 제 생각에는 예결위가 그냥, 저희가 여기에서 결정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저 위에 거는 진짜로 기관운영 관련된 상임위의 일종의 판단과 내용이라 저는 나중에 어떻게 수정을 하든 말든 하더라도 간사님들께서 협상하시면서 상임위 의견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거 그냥 저희끼리 하는 것도 너무…… 상임위가 의결해서까지 올린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는 것 같아서 그냥 보류하시고 이 협상 하실 때 그래도 상임위 의견 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예, 그렇게 합시다.

장철민 위원님이나 허영 간사님 입장도 그렇고 또 뭐 재난이라는 게 미연에 방지하고, 안 일어나면 가장 상수겠지만 재난이라는 게 일어나고 나서의 그 사후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 입장이나 여러 가지 보수진영 입장에서 미흡하다고 비쳐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충분히 지적했지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류하겠습니다. 보류하는데, 상임위에도 좀 더 진지한 자세로 설명을 좀 더 부탁드립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종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186쪽 연번 1번입니다.

민간의료보험 비급여 진료 관련해서 민간의료보험 과다진료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에서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예,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종문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부대의견으로 분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실손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관계부처 간에 협의가 있고 9월, 10월 중에 보건복지부와 금융위가 협의를 하고 12월 전에 의개특위 2차 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총리도 부처들을 불러서 의견을 듣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총리실 예산 사업과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대의견으로 분류해 주시면 더 좋겠다 싶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예, 혹시 위원님들 부처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용선 위원 대체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하나 좀 여쭙볼게요.

지금 실손보험의 부작용이 상당히 심각한 것은 인지하고 계시지요?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종문 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용선 위원 사실 과다진료의 주원인이 되고 있고, 이 문제는 그러다 보니 보험료도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종문 예.

○이용선 위원 그래서 애초에 실손보험 취지하고는 전혀 지금 판판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재정 당국들, 관계 당국들하고 협의해서 빨리 대책을 잘 강구하는 것을 촉구드리면서 부대의견으로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예, 이용선 위원님 의견 포함 부대의견으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마지막 지적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연번 2번, 댐 주변 지역 관련 사업인데요.

댐 소관 부처 차이에 따른 주민지원 격차 해소 필요입니다. 환경부인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인지에 따라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에서 이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예,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종문 주민지원에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아까와 같은 입장에서 부대의견으로 분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결위에서 한기호 위원님이 이 문제를 제기하시고 난 이후에 환경부, 산업부하고제가 오기 전에도 이야기해 봤는데 불합리한 점이 있고 시정을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국조실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부처 간 협의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총리실의 예산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조금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예산 지적사항보다는 부대의견으로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예, 위원님들 의견……

○허영 위원 허영입니다.

직접적인 제 지역구하고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거를 위해서라도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환경부가 14개 지역에 댐을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를 해서 사실상 환영하는 지역도 있고 삭발, 단식, 극심한 주민 수용성 내지 지역과의 사전 합의 없이 발표한 문제 때문에 지역 내 갈등들을 유발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댐 건설은 그동안 발표할 때마다 그러한 반복되는 업무 추진 방식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특히나 작년 예결소위에서도, 결산소위에서도 환경부의 10개 댐 건설 계획들을 심의하는 과정도 있었고,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4개 댐을 더 해 가지고 진행했는데 지역과의 협의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이번 과정에서, 반발 과정에서 드러나고 그랬던 것이고, 여기에는 각종 다양한 지역의 지원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명기한 것처럼 환경부와 산자부 등 소관 부처 간에 이견 조율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도 있고 지자체와 광역단체와의 통합적인 그런 어떤 업무 조정과 사전 소통의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국무조정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기호 위원께서 직접적으로 지역구에 들어서는 양구 수입천댐 문제에 대해서 예결위 과정에서 지적을 하시고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직접적인 일이 아니라고 회피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주도적으로 부처하고 관계 기관하고 잘 협의해서 예결위나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율하는 컨트롤타워를 잘하시라 이 말입니다.

○허영 위원 국무조정실에서 이런 걸 안 해 주면 국무조정실이 왜 있습니까? 이거는 자잘한 부처 간의 협의 사항도 아니고 지역 간의 굉장히 큰 갈등을 양산하는 큰 문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이런 의제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국무조정실에서 갈등이 유발될 것을 예상하고 이것은 국무조정실 부처 간 협업 시스템들이 자동적으로 발생해서 자동적으로 구동돼야 될 그런 업무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으니 이 부분들에 있어서 앞서 사례와 같이 부대의견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김종문 예, 위원님.

○소위원장 구자근 명심하십시오.

○전문위원 정대영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

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허영 위원** 위원장님, 잠깐……

○**소위원장 구자근** 예.

○**허영 위원** 앞서 제가 환경부 10개 댐 계획 등에 대해서 작년에 결산소위가 아니라 예산소위 과정에서 지적했다는 말씀으로 정정 요청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속기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좀 이해해 주면 좋은데, 방금 우리 허영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가보훈부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입니다.

○**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 김주용** 기초실장 김주용입니다.

○**국가보훈부보훈예우정책관 임종배** 예우정책관 임종배입니다.

○**국가보훈부정책기획관 박진수** 정책기획관 박진수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자리해 주십시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213쪽입니다. 연번 2번,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 국립산청호국원, 국립괴산호국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초과근무수당 지출 증가로 공무원 등 인건비가 당초 예산 대비 초과 집행되고 있으므로 공무원 인건비를 적정하게 편성하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부처 의견을 듣겠습니다.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국가보훈부는 상임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시정요구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의결한 점을 감안하여서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국립묘지의 특성상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공무원의 초과근무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점을 감안해 주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국립묘지의 공무원 인력운용 상황을 점검해서 적정 규모의 인건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곽규택 위원** 그러시지요. 들어 보니까 맞네.

○**장철민 위원** 장철민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로 온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어느 정도 반영을 하신 건가요? 이게 이

사안이 해결될 만큼은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제도개선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적정 예산 반영, 인건비 반영하겠다는 거라고 하신 건데……

○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 김주용 내년도 예산에는……

○소위원장 구자근 잠시만요. 직책하고 소속을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세요.

○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 김주용 보훈부 기조실장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작년도하고 동일하게, 거의 비슷하게 태워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운영이 된다면 내년 2025년도 예산요구서부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철민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시정이 안 되겠네요.

○곽규택 위원 금년 예산하고 같다는 말씀 아니신가?

○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 김주용 예, 그렇습니다.

○이용선 위원 이용선입니다.

하나 궁금해서, 제가 지금 잘못 본 건지 통계가 잘못된 건지 궁금해서.

도표를 보면 산청호국원하고 임실호국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초과근무시간 수도 거의 같고, 1년에 1인당 263시간, 262시간 그런데 근무수당은 한 150만 원 차이 나 거든요. 근무지의 직급이 다른 건지 왜 이런 초과근무수당의 차이가 거의 50% 정도 나는, 초과근무시간은 같은데 왜 수당이 그렇게 한 50% 차이 나지요?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지금 수당은 당연히 그 금액은 같습니다. 직급별로 주어진 수당은 정액으로 지정돼 있는데 각 호국원별로 공무직 편성 인원예 좀 차이가 있고 또 예를 들면 예전에 들어오신 분들은 계속 급수가 올라가면서 그 단가 자체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좀 있었고……

○이용선 위원 개인별 급수 차이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그렇게……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용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장철민 위원 장철민입니다.

이것 좀 실무적인 궁금함인데, 4·19민주묘지나 이런 데 보니까 초과근무시수가 1인당 190시간인데 초과근무수당이 190만 원이면 이게 시간당 1만 원 정도인데 그러면 가산임금 적용이 안 된 사항인 거예요?

○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 김주용 휴일수당 같은 경우에는 1.5배 더 가산금이 있습니다.

○장철민 위원 그러니까 야간일수도 있고, 그러니까 연장근로수당의 대부분이 가산수당이 있어야 되는데……

○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 김주용 그렇습니다. 가산수당이 당연히 있습니다.

○장철민 위원 가산을 했는데 시간당 1만 원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은 법 위반일 수도 있는데?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지금 제가 단가는 정확히 기억은 없지만 하여튼 그 금액은 정확하게 단가를 계산해서 저희가 지급을 한 건 맞습니다. 별도로 거기를 덜 주고 안 주고 이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 김주용 요새는 공무직노조들이 있어서 노조 협상에 따라서 다 임금 정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전혀, 불이익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제도개선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 214쪽입니다. 동일한 사업인데요.

국립호국원 안장 잔여기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봉안당 확충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봉안당 확충 공사의 사업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시정과 제도개선 두 유형이 있는데 이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상임위에서 시정요구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의결한 점을 감안해서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영향으로 관계 기관과의 인허가 및 총사업비 협의 등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건립 사업이 순차적으로 좀 지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철저한 사업관리로 건립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괴산호국원은 금년도 7월에 준공을 완료하였고 산청호국원은 연말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호국원은 순차적으로 해서 내년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대영 215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대부 사업, 5·18민주유공자 대부 사업, 특수임무유공자 대부 사업, 국가유공자 대부관리, 5·18민주유공자 대부관리, 특수임무유공자 대부관리 사업입니다.

국가보훈부는 민간은행 위탁대부 사업의 채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채권 양수 재원을 별도의 지출 사업으로 편성하지 않고 직접대부 재원을 통해 수행하고 있는 방식을 개선하라는 뜻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 2개가 있고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상임위원회에서 시정요구 유형을 제도개선으로 의결한 점을 감안해서 이 또한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채권 양수 재원을 별도 지출 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을 저희가 26년도 예산편성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 이용선입니다.

왜 내년부터 안 하고 26년입니까?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올해 편성은 이미 정부안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용선 위원 이미 지났기 때문에……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그리고 이번에도 저희가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시면 얼마든지 지출을 따로 편성할 용의는 있습니다.

○이용선 위원 그렇습니까?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예, 그렇습니다.

○이용선 위원 알겠습니다.

○장철민 위원 장철민입니다.

올해부터 하시지요, 아직 국회에서 예산 협의도 안 했는데. 어차피 지출 계정 바꾸고 하는 것들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조정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내후년으로 미뤄서 하는 것은 제가 별로 이해가 되는 일은 아닌데요.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노력하겠습니다.

○허영 위원 기재부차관님, 허영입니다.

이것 보훈부하고 함께 협의해서 가지고, 법제도 미비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제도개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217쪽, 보훈병원 진료, 위탁병원 진료, 제대군인 의료지원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의료지원 진료비 부족에 따른 연례적 이·전용 문제를 개선하라는 요구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시정요구사항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세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요. 첫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는데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수용하시는 거고?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예,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주의, 시정 수용하시는 거고 첫 번째 부처 의견 이야기해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첫 번째 것은 주의로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시정하고 다 받아들인다는 겁니까?

○허영 위원 시정을 주의로 수용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소위원장 구자근 시정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허영 위원 시정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세 번째 것?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지금 두 번째, 세 번째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것은 주의, 두 번째 것은 주의, 세 번째 것은 시정으로 저희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소위원장 구자근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 사업입니다.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 보조금의 집행관리를 강화하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시정과 주의 두 유형이 있고 이 두 유형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이 사안도 상임위에서 논의를 할 때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로 의결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의로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가 지금 공정률이 98% 이상 진행되고 있고 10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 의견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고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223쪽입니다.

생활조정수당인데, 동 수당의 집행 부진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 추계 정확성 향상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주의와 제도개선 두 유형이 있고 이 두 개의 유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보훈부는 시정요구 유형을 예결위에서 요구한 제도개선으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24년까지 해서 지금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보상금 지급 대상 변동 추이 시스템을 마련해서 고령 수급자분들 사망률뿐만 아니라 지급 대상, 항목, 연도별 변동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저희가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년 되면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예, 많이 줄 것이고 궁극적으로 수년 안에 완전히 정착시키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226페이지, 보훈정신계승발전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계약 체결 시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시정과 주의가 있고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시정요구를 예결위에서 요구하신 주의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수의계약하는 거는 분명히 저희가 좀 확대 해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 교육을 철저히 하고 사업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수립해서 절대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낙찰차액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당초 계획하지 않은 신규사업에 활용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이게 상임위에서는 시정요구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내용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허영 위원 허영입니다.

이것 그냥 시정 받아들이시지요. 이거 여러모로 수의계약 체결 건도 그렇고 낙찰차액을 신규사업 추진하는 데 집행하는 것은 법령 위반입니다.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정해서 열심히 잘 관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시정 받아들이시고……

○전문위원 정대영 이제 마지막입니다.

227페이지입니다. 기타재산이자외수입인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 88골프장 매각계획을 매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함에도 불구하고 매각되지 않고 있어 88골프장 매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해 징계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국가보훈부는 시정요구 유형을 징계에서 주의로 조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이유는 일단 첫 번째, 88골프장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골프장 설립 당시에 세출예산이 아닌 국가유공자의 정지연금과 보훈성금으로 건설비 345억 원을 충당해서 건립한 공익 골프장입니다. 보훈단체들이 보훈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고 08년도에 매각 결정이 난 당시에 상이군경회에서 당시 대통령께 반대 의견을 전달하기도 하였고 매각 반대 언론 활동을 한 것으로 보아서 매각을 추진 시에는 큰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골프장 운영 수입이 보훈기금의 유일한 자체 수입원입니다. 그래서 22년도에는 141억 원, 23년도에는 140억 원 등 안정적으로 복지재원 마련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88골프장 개장 이후에 총 3115억 원의 보훈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의로 요청을 드리는 바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시정요구사항의 문구도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줄은 그대로 가고 ‘매각 기금운용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그 뒤의 줄은 삭제를 원하고 다른 말로 ‘있는데, 계획과 집행 간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이렇게 문구 조정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민 위원** 장철민입니다.

지금 그러면 88골프장 매각 안 하시겠다라고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언제 결정하신 거예요?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사실 매각을 안 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이게……

○**장철민 위원** 아까는 안 하실 것처럼 얘기하셨는데……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그게 말씀드렸던 것과 조금…… 이 골프장 자체가 그냥 민간 회사나 이렇게 건설된 게 아니고 이게 돈 자체가 보훈성금하고 정지연금이라고 그 당시에 취직을 했다가 안 하시게 되면 연금을 지급하는 연금 종류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두 종류의 금액을 가지고 건립을 한 부분을, 공익 골프장이란 부분을 저희가 조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장철민 위원** 아니,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그러면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시겠다라고 하면 이게 계속 매각 계획이 있구나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게 큰 반발이 예상되니까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해 놓고 지금 시정요구사항은 계획과 집행을 일치시켜라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매각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계획에서 다 빼야지요. 기금운용계획 변경 다시 해 가지고 수입 부분에서 빼야 되고요. 그게 일치시키는 거지요, 정확하게.

○**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 김주용** 맞습니다.

○**장철민 위원** 그런데 그것을 말을 그렇게 하시면 사실 이것은 하나 마나 한 시정요구를 하라고 저희한테 요구를 하시는 건데.

○**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 김주용**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이 2008년도에 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때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골프장이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뉴서울CC라고 있었고 하나는 국가보훈부 소속의 88CC가 있었는데, 선진화 계획이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철회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선진화 계획이 있다 보니까 그 계획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장철민 위원** 선진화 계획이 남아 있어서 보훈부가 자체적으로 빼는 게 어렵긴 어려운데 실제로는 팔지 않겠으니까 하나 마나 한 시정요구를 그냥 남겨 달라라는 게 요청사항이시네요.

○**이용선 위원** 이용선입니다.

아니, 자료에 의하면 이 매각 계획은 정부에서 안을 수립해서 23년에 국회까지 보고해서 확정된 것이고 또 올해, 내년 계획에도 다 매각으로 확정돼 있는데 방금 설명하신 것은 그것하고 전혀 좀, 부처 의견은 사실상 매각하지 않는 쪽으로 안을 갖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정식으로 내부에서 입장을 정리해서 계획을 바꾸지 않고서야 방금 말씀하신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고 넘어가자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 김주용** 기재부하고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을 매각할 것인지 아니면 선진화 계획을 좀 변경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담당 부서랑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제가 한 말씀……

○소위원장 구자근 예.

○곽규택 위원 곽규택입니다.

두 가지 여쭙어보겠습니다.

지금 지적사항 중에 ‘88골프장 매각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라고 되어 있는데 매각 결정된 다음에 매각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는 하셨습니까?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예, 저희가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과거에 몇 차례 진행한 바는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을 매각하게 되면 그 매각대금이 보훈기금에 다 편입이 되는 건가요?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예, 그것은 맞습니다.

○곽규택 위원 그러면 매각대금으로 지금 보훈기금에 편입되는 그 금액하고 이것을 계속 운영했을 때 운영 수익이 보훈기금에 편입되는 것하고 따졌을 때 어느 게 더 이익인가요? 계산해 보셨습니까?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예, 일단 편익 비교를 저희가 지난해 사실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한 번 비교는 해 봤습니다마는 일단 현재는 골프장에서 약 140억 정도 수익을 받고 있고……

○곽규택 위원 연간?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예, 연간 받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저희가 매각하는 비용이, 아까 말씀하신 과거 08년 선진화 계획 할 때 저희가 진행을 한 번 했었는데 현재까지 37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3700억이요?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예, 그러면 그게 보훈기금으로 들어오면 저희가 각종 자산운용사 통해서 할 텐데 지금 저희가 다른 보훈기금 운용을 해 보니까 생각보다 안정성은 좀 불안합니다.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으로 지금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알겠습니다.

○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 김주용 그런데 이게 영속성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크게 매각대금을 받게 되면 언젠가는 이게 소진이 될 것이고 88에서 수익금이 140억 이상 매년 들어오기 때문에 영속성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매각을 안 하고 수익금이 계속 들어오는 구조가 훨씬 더 유리하다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박수민입니다.

이게 히스토리가 있는 건데 15년 된 거라서…… 이게 15년 동안 매각이 안 된 거를 지금 현재 담당자 징계 이것은 조금 앞뒤 안 맞는 면이 있고 제 생각에는 기재부랑 현시점에서 다시 한번 매각을 진행하실지, 보훈처가 계속 관리하면서 합리적으로 더 유지할지 그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저는 제도개선으로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용선 위원 이용선입니다.

아마도 이게 23년에 매각 결정할 때와 지금이 매각가에 변동이 많이 생겼을 겁니다. 그건 더 잘 아실 텐데 지금 골프에 대한 관심도 많이 줄었고 코로나 시대가 지나면서부터 가수요가 격감됐지 않습니까?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예.

○이용선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골프장의 매각비용이 그렇게 높지 않으리라고 예측되는 것까지를 감안해서 저는 조정안을 빨리 수립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 김주용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허영 위원 허영입니다.

국가보훈부의 이 사업 자체가 아니라 소통 방식에 대해서 조금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까.

예결위 과정이나 예결위원이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징계를 포함한 어떤 시정조치를 했을 때에 있어서는 그것을 삭제하고 이런 것들을, 부처가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지적사항에 대한 수정의견을 그렇게 과감하게 내시는 건 아닙니다.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예, 알겠습니다.

○허영 위원 사전에 오기형 위원께 소통을 하셨습니까?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예, 가서 설명드렸습니다.

○허영 위원 오기형 위원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그것은 우리 담당 국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영 위원 징계 의견을 철회하셨습니까?

○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 김주용 철회하지 않으셨고요.

○허영 위원 그러면 소통의 과정을 얘기하시고, 이 문제 제기를 해 주신 위원이 징계 의견을 철회하지 않았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징계를 삭제하고’ 이런 표현을 과감하게 쓰시는 것은……

그리고 이 사안은 국회에서 매각 결정을 권고한 사안 아닙니까?

○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 김주용 예.

○허영 위원 그런 것들을 사전에 그런 양해도 없이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면 안 됩니다.

○국가보훈부기획조정실장 김주용 오기형 위원께 담당 국장이 가서 설명을 하고 왔고요. 오기형 위원 말씀은 소위 의결을 따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허영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얘기하셔야지 그런 것들을 짝둑 잘라 버리고 지금…… 누구시지요?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차관입니다.

○허영 위원 예, 차관께서 ‘삭제하고’,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양해 없이 의견을 내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위원님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이것은 제가 보기에……

허영 위원님 말 보태서 보류로 넘기겠습니다. 다시 잘 설명해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예.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위원장님, 부처에서 수용을 한 것 중에 저희 재정 당국 쪽에서 조금 이의 있는 게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것이라는 상임위 지적사항을 부처에서는 다 수용을 해 버려 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예.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193페이지의 7번입니다.

193페이지의 7번 보시면 시정요구사항의 맨 밑의 줄에 ‘정부안에서 삭감된 광복회 예산은 2025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되살릴 것’ 지금 이게 상임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2025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된 말씀을 주셔서 가지고요 이 부분은 조금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그러면 어떻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그래서 ‘마련할 것’ 뒤에 ‘및 정부안에서 삭감된’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25년도 예산편성 관련된 것은 가이드라인이 일단 돼 가지고요.

○허영 위원 아니, 이것은 적극적인 의지가 좀 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그런데 이 부분은 25년도 예산안 심의하는 소위에서 다루는 게 맞을 것 같고 결산소위에서 25년도 예산에 되살릴 것 이렇게……

○장철민 위원 장철민입니다.

어차피 이 문구는 정부를 기속하는 게 아니라 국회 예산 과정에서 얘기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차피……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그런데 이게 주체가 보훈부기 때문에 상임위 시정요구는 해당 부처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라……

○소위원장 구자근 ‘되살릴 것’이라고 하지 말고 ‘되살리도록 노력한다’든지 ‘노력한다’ 이렇게 표현이 좀, 그거나 저거나……

○허영 위원 물론 정부의 예산편성권에 대해서 침해하고자 하는 상임위의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산과 예산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상임위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기재부차관께서 이것을 어떻게 수정 보완해야 될지……

이것을 싹둑 자를 수가 있겠습니까, 상임위의 의견인데?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산심의 과정에서 노력할 것’이라는 정도로 해 주시고 그 취지는 하여튼 의지 표명이고 기속이 안 된다는 걸로 저희는……

○소위원장 구자근 차관님 말고는 다 의지 표명이라는 것 압니다.

○이용선 위원 되살리도록 노력할 것.

○소위원장 구자근 예, ‘노력할 것’이라고 조정해서 그렇게 합시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그리고 또 다음 194페이지에 있는 8번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시정요구사항에 ‘국가보훈부는 애국지사 상이국가유공자 등의 도시철도, 광역철도 감면 이용액을 보조하는 예산을 편성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도시철도와 광역철도 감면 이용액에 대해서는 보조하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5년도 예산에 신규로 반영하라는 상임위의 시정요구사항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것’ 이렇게 하기보다는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정도로 해 주시면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저희가……

○소위원장 구자근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 위원들께 개별적으로 들어오면 혹시 예산으로 넣든지 하여튼……

○허영 위원 노파심에서, 기재부차관님도 물론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수정의견 내시는 것은 좋은데 상임위 의결 사항을 다 삭제하자 이런 것은 그것

자체도 월권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국가보훈부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조홍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기획조정관 전성복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조정관 전성복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맹거래정책과장 김대간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장 김대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운영지원과 박동수 업무지원팀장 박동수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자리해 주십시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246쪽, 연번 1번입니다. 과징금입니다.

과징금 임의채납액에 따른 장기 미수납액 증가에 대한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이 주의와 제도개선 2개의 유형이 있고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부처 의견을 듣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조홍선 저희들 시정요구 수준을 상임위 요구 수준인 제도개선으로 수정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아니, 내용 설명을 해 주셔야지. 간곡하게 이야기하시는데 앞에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간곡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조홍선 저희들 과징금 징수일이 상대적으로…… 미납액이 780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때문에 기업들이 부도 상황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어서 징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들과 협조를 많이 해서 과징금 징수율을 높이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상임위 위원들한테는 충분히 동의가 되고 이해가 구해졌는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조홍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드렸고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개선 사항 정도로 상임위에서는 저희들한테 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다른 위원님들이 물으시지 싶은데,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향후 진행

해야 될 제도개선은 따로 뭐 있나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조흥선** 저희들이 은닉 재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예컨대 주식이나 가상자산 등에 대한 재산 소유 현황 등도 파악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징수할 수 있는 수단을 저희들이 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이용선 위원님.

○**이용선 위원** 이용선입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소위 재산이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은닉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확인이 안 되거나 해서 회수를 못 하는 경우들이, 환수를 못 하는 경우들이 문제일 텐데 방금 말씀하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제도나 이런 보완되는 게 필요한 건지, 그렇게 되면 개선하는 데 꽤 실효성 있는 성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조흥선** 사실 근본적인 거는 보통 개인이 아니라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사실 자금이 부족한 상태라서 안 그래도 부도 등 때문에 저희들이 징수하기 어려운 측면이 주된 거고요. 다만 이제 부분적으로나마 은닉 재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자 압류시스템을 활용한 다든지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만 한계는 있습니다.

○**이용선 위원** 이게 법인을 대상으로만 합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조흥선** 예, 그렇습니다.

○**이용선 위원** 기업주나 이런 경우는 대상에서 빠지게 되나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조흥선** 보통 과징금이라는 게 사업을 하는 사람한테 저희들이 부과하는 거라서, 물론 개인사업자도 있습니다. 개입사업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개인한테도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모도 작고 해서 저희들이 쉽게 할 수는 있습니다, 재산이 있다고 확인되기 때문에. 다만 기업들 같은 경우는 부도 이런 상태기 때문에 사실은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경우가 많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용선 위원** 알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지금 우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노력을 합니다라는 아마 역부족이신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사항이 임의체납 비중이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조흥선** 예.

○**안도걸 위원**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8.3, 12.3, 27.4,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국회의 처분은 주의, 제도개선, 주의가 왔다 갔다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 또 주의가 됐든 제도개선이 됐든 상황 개선이 별로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조흥선** 예.

○**안도걸 위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이 비중을 조금이라도 낮추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겠느냐……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조흥선** 저희들 현실적으로는 일단 과징금 부과 자체를 효율적·합리적으로 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과징금 부과한 측면에서는.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미수납액 비중이 높아지는 이유는 기존에 쌓였던 게 계속해서 누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과징금이라는 게 소멸시효가 있기는 있지만 바로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그걸 결손 처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걸거나 해서 어느 정도는 기간이, 소멸시효를 중단시켜 갖고 연장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미수금이 누적적으로 쌓이기 때문에 비중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철민 위원** 장철민입니다.

저도 여쭙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행위별로 다 다르기는 할 텐데 대체로 이 부과된 과징금이 어떤 형태인지가 약간 궁금해서요. 예를 들면 영업정지 며칠 대신하는 과징금 이런 형태도 간혹 있는 것 같고, 아니면 공정거래 관련 뭔가 부당한 이득의 몇 배 이런 식의 징벌적인 과징금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못 내면 다시 영업정지 가는 거잖아요. 보통 어떤 형태들인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조흥선** 저희 같은 경우는 학문상 나오는 과징금 종류가 아니라 대부분 위법행위에 대해서 부당이득을 징수하는 측면도 있고 위법행위에 대해서 징계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냥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공정거래법은 어떤 사업자의 위법행위, 시지남용이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기 때문에—그것도 위법행위에 대한 관련 매출이겠습니까—관련 매출액의 경우에 따라서 1%, 많은 거는 4%, 5% 정도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장철민 위원** 매출액의 몇 % 이런 방식으로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조흥선** 예, 대부분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제도개선으로 하고, 안도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조흥선**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더 노력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대영** 248쪽입니다. 연번 3번,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 사업입니다.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거래행태 개선을 위한 표준계약서 사용률 제고 및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 참여 유인 마련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이 시정과 주의인데 두 유형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조흥선** 이번 건도 저희들 시정요구 수준을 시정보다는 주의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이유는 사실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거래행태가 가맹점에 비해서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형식적인 표준계약서로 다양한 거래행태를 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약간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낮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다양한 거래행태를 어느 정도 담을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표준계약서를 개정하는 식으로 수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 가맹본부 같은 경우는 협약, 이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평가를 안 받는 이유가 대부분 그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다른 하도급이나 유통이나 가맹보다는 약간 평가이행률이 낮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소규모 가맹본부한테도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이행평가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이행평가를 받으면 가맹 같은 경우는 정보공개서라는 게 있는데 정보공개서 표지에 평가이행을 받았고 어느 정도 좋은 기업이다라고 알릴 수 있는 표지를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장철민 위원 장철민입니다.

질문사항인데요. 그러니까 표준가맹계약서나 그냥 단순 표준유통계약서에 비해서 대리점 계약서의 사용률이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하게 무슨 홍보를 잘못해서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대리점 계약을 맺는 대리점들이 시장에서의 상대적인 위치가 훨씬 더 열위에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이게 단순하게 이 사업에 무슨 홍보 잘하고 뭐 잘하고 계약서 더 잘 쓰고 이런다고 해결이 되는 문제인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조흥선 그런 측면도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오히려 가맹점보다는 대리점들이 규모가 좀 더 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다만 가맹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계약 내용이나 조건이 다양하고 세분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리점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공급계약서만 체결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수위나 이런 부분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난다고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 결과 나타났습니다.

○장철민 위원 이상입니다.

○허영 위원 허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님, 쿠팡CLS는 산하 대리점인가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조흥선 쿠팡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만약에 배달기사 관련해서 쿠팡이 있고 쿠팡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CLS가 있고 그 밑에 여러 가지 영업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하도급거래 형태로 이루어져 가지고 그런 부분이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허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가맹도 아니고 대리점도 아니고 이상한……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조흥선 예, 하도급……

○허영 위원 법을 피해 가는 이상한 조직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표준계약서도 쓰지 않고, 하여튼 불법과 편법과 그 경계를 교묘하게 피하는 그런 사업 행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정거래위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조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좀 말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영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플랫폼 사업자들처럼 새롭게 여러 가지 법망을 피해 가지고, 현행 여러 가지 사업구조를 변경해 가지고 새로운 노동 형태와 그것으로부터 엄청난 사망 사고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 측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립 목적인 소비자 측과 을의 입장에서 사실상 공정시장질서 확립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저는 이 지적사항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국회의 지적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미흡해요. 저희들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을 했는데 입장을 안 내세요.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조흥선**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영 위원**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그런 것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이 산업에 미칠 영향, 사업체에 미칠 영향을 먼저 고민해서 가지고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보호기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조흥선** 예,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을의 입장에서 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마무리하시지요.

나중에 예산 또 남았기 때문에 답변 신중하게 잘하셔야 돼요. 다시 또 물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조흥선**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여기에서 신중하게 답변 잘하시고, 주의로 해 드리겠습니다. 주의로 하고 나머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조흥선**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금융위원회기획조정관 유영준** 기획조정관 유영준입니다.

○**금융위원회행정인사와 김현수** 경리팀장 김현수입니다.

○**금융위원회청년정책과 김이재** 청년정책과 사무관 김이재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자리해 주시고,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279쪽, 연번 1번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신규 가입 인원을 과다 추계하여 이월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청년도약계좌 사업 수요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 첫 번째 동그라미, 주의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는 주의와 시정 두 시정요구 유형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 주의에서 주의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예산은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을 형성하고자 하는 청년층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편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예산편성 당시는 청년도약계좌 출시 이전으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중복가입 허용 가능성도 있었고 금리 등 시장여건의 불확실성, 즉 고금리가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었고 사업의 안정적 운영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추계하였습니다.

다만 상품 출시 이후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의 중복가입이 허용되지 않았고 2023년 이후 시중 일반적금 상품 금리가 높아지는 등에 따라 당초 추계보다 가입자가 천천히 증가한 면이 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그간 축적된 가입통계, 금리 등 시장여건 변동 가능성, 안정적 사업 운영 필요성, 청년 수요 충족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적정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래 8명의 위원님이 시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8명 중 7명의 위원님들은 주의로 해 주신다고 이미 하셨고 한 분은 시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다른 분들이 전부 동의하시면 주의로 해 주신다고 구두로 말씀해 주신 상태입니다.

주의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허영 위원 소통을 열심히 하셨네요.

○소위원장 구자근 정부 부처의 노력과 소통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민 위원 장철민입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중복가입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300만 명이에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287만 명입니다.

○장철민 위원 287만 명이에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그것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금리가 너무 높게 지속이 돼 가지고요. 금리가 좀 낮아졌으면 이게 경쟁력이 더 있는데 금리가 높기 때문에 시중 적금도 이전보다 좀 높아지는 바람에 약간 경쟁력이 약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금리가 낮아지면 훨씬 더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고금리가 얼마나 지속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던 문제가 있습니다.

○장철민 위원 이것은 예전의 내일채움공제나 이런 방식으로 같이 매칭해서 넣어 주는 그런 방식은 아닌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다시 한번 말씀……

○장철민 위원 도약계좌는 그냥 금리만 높은 상품인 사업인 거예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은행권에서 확정금리를 주고 그다음에 기여금이 있고요. 정부에서 기여금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자소득세도 없고요.

○장철민 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지요? 정부에서 기여금을 어느 정도 같이 넣어 주는 거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정부에서 넣은 금액의 3~6% 정도의 기여금을 주는 적금입니다. 본인이 낸 것의 3%에서 6% 정도 정부가 추가적으로 돈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이자를 추가로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과세하고 정부에서 주는 이자를 포함하면 보통 이자가 9% 이상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원금을 태우는 게 아니고요. 이자를 추가로 지원하고 거기에다가 비과세를 하게 되면 이자율이 아주 높게……

○허영 위원 부위원장님, 도약계좌 전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희망적금이라고 있습니다.

○허영 위원 희망적금사업이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허영 위원 희망적금사업 전 사업은 어떤 사업이었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아주 똑같은 사업은……

○허영 위원 전혀 똑같은 사업은 없었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적금은 2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허영 위원 그런데 이 도약계좌사업의 가입 추정치를 조금 과다 추계하신 거잖아요, 지적이?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허영 위원 예, 지적이?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맞습니다.

○허영 위원 그런데 과다 추계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가입을 하지 않은 게, 안 한 이유가 뭐라고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계신 겁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희망적금 첫째 2023년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중복가입이 허용이 안 돼서 안 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금리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고금리가 이렇게 오래 될지는 저희가 알기 어려웠는데 사실 일반적금이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좀 더 많이 올라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그리고 희망적금이란 비교를 해서는 가구소득 요건이 있는데 아마 그 부분도 작용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허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용선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청년희망적금이 올 2월로 종료가 되고 나면 도약계좌로 갈아타거나 신규로 하는 청년들 숫자가 대폭 늘어날 거다 이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는 거 같은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기존에 비해서는 희망적금 이후에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선 위원 내년 예산도 3750억이 반영돼 있던데 그러면 지금쯤이면 대체로 어느

정도 가입했다 이게 통계가 잡히지 않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내년 정도 되면 아마 200만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용선 위원 200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내년. 그래서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용선 위원 아니, 306만일 때 3440억을 하게 되면 내년에 3750억 예산이 반영돼 있던데 목표치가 200만이면 이것도 예산하고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아니, 200만은 더 되고요, 200만은 충분히 돌파를 해서 300만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선 위원 그렇게 전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안도걸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쭙볼게요.

위원회에서 작년에 집행하실 때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을 다 넘겨주셨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안도걸 위원 그러면 진흥원이 이 돈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예를 들어 미집행된 것은 지금 다시 반환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아직은 반환은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운용을 잘해서 이자가 계속 나오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반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러니까 출연금이니까 그냥 거기에다 쥐 버렸고 금융진흥원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운용을 해서 생기는 이자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상태라 이겁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맞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우리 국고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기재부차관입니다.

보조금하고 출연금의 차이인데요. 보조금 같은 경우는 1원이라도 이자가 발생하거나 돈이 남으면 100% 국고 환수가 원칙이고요. 출연금 같은 경우는 개별법에, 특히 사업 출연이기 때문에 사업 출연금을 쓰고 남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반납한다는 규정에 대해서 개별법에 그런 근거가 없으면 현재 국가재정법상에는 사업 출연금은 그냥 주고 해당 기관에 돈이 남게 됩니다.

○안도걸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출연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회수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고, 또 이 돈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신규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내년 물량이 23년 물량보다 더 적기 때문에, 그 이상의 돈이 가 있기 때문에 2000억이 됐든, 아까 3750억이라고 했나요? 이 돈을 새로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안도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지난번에 출연했던 돈들이 안 쓰고 남아 있는 잔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잔액을 고려를 안 하고 그냥 생짜배기로 출연을 해 주는 게 아니고 그 남아 있는 잔액을 고려해서 출연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잔액이라는 것 자체가 서민금융진흥원이 탄

데로 돌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기존에 있는 예산하고 합쳐 가지고 신규의, 아까 300만 명이라 그랬나요? 그 누적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에게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도걸 위원** 그러니까 쓰지 못한 기존 출연금 그리고 신규 출연금 합해서 3750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주의로 하고,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282쪽, 연번 5번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입니다.

출자 규모 대비 2023년도 사업 실적이 매우 저조하므로 협약기관 확대 등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저조한 채권매입 추이에 근거하여 전체 매입계획을 재검토하고 대부업 등 채무조정 관련 협약기관을 확대하는 등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이 있습니다.

상임위는 제도개선이고 예결위에서는 시정이 나왔는데,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두 번째 문장 중에서 ‘대부업 등’이 있습니다. ‘대부업 등 채무조정 관련 협약기관’이 있는데 당초 상임위에서는 ‘대부업 등’이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그냥 ‘채무조정 관련 협약기관’이 나와 있고 예결위 지적에서는 ‘대부업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 ‘대부업 등’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 제도개선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고, 시정요구사항 문구에서 ‘대부업 등’을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수요 전망을 재설정하고 협약기관을 확대하는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그간 협약 가입률이 낮은 업권을 중심으로 가입을 독려하였으나 채권매입추심 영업을 하는 대부업권은 기금의 채권 매각 시 영업 근간이 훼손되어 가입 유인이 없는 만큼 시정요구사항 중 대부업 등을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이게 상임위 단계에서 이리로 넘어오면서 ‘대부업 등’이라고 용어가 추가되었다는 말입니까, 시정요구사항에서?

○**전문위원 정대영** 상임위 차원에서는 의결할 때는 ‘대부업 등’이 없었습니다, 상임위 의결했을 때는. 그런데 예결위 회의장에서 서면질의 나올 때는 ‘대부업 등’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상임위를 할 때 원래 ‘대부업 등’이라는 문구가 있었는데 저희가 설명을 드렸더니 전부 이해를 해서 가지고 ‘대부업 등’을 뺐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시 지금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다시 설명을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업 자체가 채권추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다 넘겨 버리면 본인들은 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업에서는 아마 절대로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수민 위원 박수민입니다.

이것은 지금 금융위 설명대로 대부업이 들어가면 오히려 어색한 거라서 상임위에서 설명된 대로 ‘대부업 등’은 좀 빠지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23년 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사항들이 나왔는데, 그런데 24년 등등 해 갖고 굉장히 실적이 올라가고 있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현재 올라가고 있고 협약업체 숫자도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박수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용선 위원 실적 좀 이야기해 주시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현재 협약업체 수는 처음에 960개였다가 2024년 8월 말에 2667개입니다. 기존 출범할 때보다 거의 3배 정도 협약업체 숫자가, 협약 금융기관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이용선 위원 지금 경제 사정이, 특히 민생경제 부분이, 서민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상공인·자영업 부분의 폐업률이 20%대를 넘나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도 이 사업이 상당히 적극적 역할을 해야 되는 시기지 않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맞습니다.

○이용선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성과들이 꽤, 지금 실적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으면 금액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인지 보고할 수 없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현재 7744억 원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소위원장 구자근 그 옆에 설명 가능하신 분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금융위원회기업구조개선과장 정종식 금융위 기업구조개선과장 정종식입니다.

이전에 월평균 5000억이 안 되던 곳들이, 작년 예산안 부대의견에서 좀 확대하라는 의견을 주셨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대상을 확대한 결과 월 기준 한 8000억 가까이 지금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용선 위원 오케이, 한 10조는 넘게 되겠네요.

○소위원장 구자근 이것 시정요구 제도개선으로 하고 대부업은 빼고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283쪽, 연번 7번입니다. FIU 인건비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및 2023 감사원 감사처분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원 외 파견인력에 대한 개선이 미흡하므로 내실 있는 인사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시정과 주의 두 가지가 있고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시정요구 유형을 주의, 시정에서 주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의 비별도 과건 직위를 2022년 말 7명에서 2024년 7월 말 3명으로 이미 감축한 상태고 또 결원도 15명에서 6.5명으로 상당 부분 축소하는 등 보다 내실 있는 금융정보분석원 정원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점을 감안하여 주의로 조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상임위에서도 해당 지적사항에 대해 주의로 요구하였음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하지 않으면 주의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285쪽, 연번 9번입니다.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세수 부족에 따른 자금 미배정으로 대규모 불용이 발생했으므로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 내용이 있었는데 그 유형이 시정과 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 주의에서 주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수 부족 등 재정상황으로 세계잉여금 등으로 충당하여 상환하였습니다. 상환기금 예산이 재정 여건에 의존하고 있어 재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공적자금 상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주의로 요구하셨음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위원님들 의견 들겠습니다.

안도걸 위원님.

○안도걸 위원 위원장님, 세수결손에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타 회계나 기금에 전출해야 될 법정전출금이 일부 상환유예가 되고 이렇게 됐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요. 전번에 유예조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알겠습니다.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같은 285페이지 10번인데요. 이것도 공적자금상환기금 청산 문제입니다.

기금 청산은 일정에 맞춘 안정적인 전입금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시정과 주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하나가 필요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이것도 같은 건가?

○전문위원 정대영 같은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보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286쪽, 연번 11번 대환보증 대위변제입니다.

동 사업이 과다한 불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과다추계를 지양하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이 시정과 주의 두 가지가 있고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저희 부처 의견 말씀드릴까요?

○소위원장 구자근 예, 부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 주의에서 주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보증 대위변제 사업의 경우 고금리 대출 및 코로나19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지원 규모를 설정하였으나 유사 프로그램들이 운용됨에 따라 수요가 분산되어 집행이 저조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과다한 수준의 공급계획 수립이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사업 설계 시 유의하겠습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상임위에서 주의로 말씀 주신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용선 위원 이용선입니다.

이게 아마 소상공인들이 대환대출로 좀 중저금리로 바꾸려고 하는 수요들이 많을 터인데 유사한 희망계좌나 이런 다른 여러 금융지원 프로그램하고의 중복 때문에 이렇게 지금 불용 비율이 높다는 건가요?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특히 처음에 중복이 많았고 그다음에 처음에 상환유예랑 연기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대위변제까지 안 간 경우도 상당히 있었고요. 저희가 처음에 소상공인 지원을 할 때 이미 있던 빚을 연기해 준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당장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대환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코로나랑 상관없이 일반적인 대환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는 일단은 가능한 한 많은 소상공인들을 최대한도로 보호를 해 놓고 생각을 해야겠다 이 부분도 좀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용선 위원 지금 시정 개선 방안 중에 공급 확대를 위한 실효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한 축이고 또 하나는 과다수요에 대한 공급계획이 수립되지 않도록 조정하겠다는, 축소하겠다는 두 가지가 동시에 지금 시정 대안으로 돼 있는데 첫 번째는 지역신보라든지 신용회복위원회 같은 이런 대상 협력기관들하고의 네트워크나 홍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좀 개선하는 게 오히려 주 방향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제가 볼 때는 이 불용을 줄이기 위해서, 예산 축소 방향은 올바른 대안, 시정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말씀하셨듯이 일단 지속적인 홍보활동이나 연계 방안을 통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허영 위원 부위원장님, 이것 그냥 저는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집행률이 몇 %였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2022년이요?

○허영 위원 말씀해 주세요. 2022년도 집행률이 3.4% 맞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22년이요? 22년에 3.4% 맞습니다.

○허영 위원 맞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허영 위원 그런데 23년도에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회가 시정요

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률 자체가 아무리 중복된 그런 관련 유사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그리고 참고로……

○**허영 위원** 그런데 중복된 프로그램 때문이라고 지금 해명을 하시는 건데 그 전년도에는 더 형편없이 집행률이 낮았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한번 해 보세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저희가 일단 제도개선은 계속 해 온 상태고요. 2023년 3월에 지원 대상, 대환 한도 그다음에 상환구조, 보증료 인하 등등 해서 일단 제도개선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2023년 8월에도 사실 가계 신용대출을 대환 대상에 포함해서 제도개선을 했었고요. 그리고 2024년 3월에 대출 대상 확대 그다음에 1년간 비용 부담 경감 등 제도개선으로는 계속 해 왔는데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달성되지 않는 것……

○**허영 위원** 그런 노력은 해 왔지만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 대위변제를 위해서 편성한 재원이 또 불용이 예상되자 금융위와 신보는 사실상 대환보증 계획액의 거의 54%에 해당하는 1206억 원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을 또 자체 변경했어요. 맞지요?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맞습니다.

○**허영 위원** 기재부차관님!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허영 위원** 이게 단순히 그냥 넘어갈 문제입니까? 충분히 불용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집행률도 문제가 있고 기금 자체도 자체 변경하고 이것을 단순히 그냥 주의…… 이 사업은 사실상 지금 폐업자 수도 완전히 도출하고 있고 소상공인·자영업자 고금리 대출을 보증부대출로 전환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중한 사업이기도 한 측면도 있는 성격의 사업이기도 한데 계속 반복되는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시정을 그냥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예.

○**장철민 위원** 장철민입니다.

이해가 정확하게 되지 않아서요. 이게 유사한 사업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하셨는데 뭐가 유사해서가 아니고 예를 들면 코로나 시기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신보나 관련 수탁기관에서 대출을 받으셨던 분들에 대한 상황을 전체 다 유예하거나 또 다 이렇게 하면 그냥 그 자체로 대위변제할 상황이 많이 안 생겨서 불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 대위변제 건 말고 다른 종류의 보증 시스템을 활용해서 그런 건지……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둘 다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환대출을 안 하고 완전히 다른 프로그램도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하는 게 한 가지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대환 프로그램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경기신용보증재단 그다음에 지역별로 신용보증재단에서 상당히 많이 공급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다른 프로그램도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 보증 프로그램 자체도 저희가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도 상당히 많이 생겨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철민 위원** 그러면 지금은 사실 상황이 조금 바뀌어서 오히려 이게 늘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내년 같은 상황에서?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이 사업이 올해 중단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가 마지막이고요, 내년에는 예산편성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장철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시정으로 하시고 이 부분은 부처의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나 우리 시중에 고통받는 분들을 생각하면 이런 불용액으로는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깊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288쪽, 연번 2번 금융의 날 행사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불필요한 행사비용을 축소하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금융위원회는 향후 금융의 날 행사 등을 위한 장소 대관 시 다과세팅비가 과도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시정할 것에 대해서 부처의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에서 주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다과세팅비는 식음료 비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장 테이블세팅에 관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테이블 세팅 관련 스태프 인건비, 테이블 세팅 관련 각종 유인물 및 구조물, 초청장 제작·발송, 사회자 등등 해서 전부 다 포함된 게 다과세팅비인데 결국 다과 자체가 많이 집행된 것이 아니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집행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2024년 예산과 2025년 예산안에는 다과세팅비가 20% 감액되어 있어 더욱 긴축적인 행사 운영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예결산 관련 자료에 다과세팅비라는 다소 모호한 단어를 사용하여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의하여 보다 적합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행사 비용이 과다하게 산정·집행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거 시정보다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상임 위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앞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할 때 조금 신중하게 처신을 하라 이런 것 같습니다.

주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마지막입니다.

292쪽입니다. 감사요구안입니다.

대한항공 경영권 분쟁과정 중 산업은행의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감사요구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기업회생 절차의 경우 기업의 충분한 자구노력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과정에서는 공적자금이 자구노력 없이 지원됐다. 공적자금 회수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의결권 있는 주식 취득방식을 채택하고, 경영권 분쟁 중인 기업에 제3자 배정을 통한 투자가 결정되었고, 산업은행이 특정 기업집단 총수에 유리한 방향으로 지원하여 경영권 분쟁이 종식되었음. 이에 공적자금이 경영권 분쟁

의 해소를 위해 지원된 것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먼저 정부 측 의견을 듣고 감사원 의견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김소영** 전반적으로 결산소위 이슈와 감사요구는 관련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감사 문구는 제외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감사원.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이 사안은 특혜를 부여한 것이냐 아니면 정책적 결정 사안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태만으로는 그게 판단이 명확하게, 이 정보만 가지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관례대로, 감사 요구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 날에 모아서 논의해 주시는 걸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논의해 주시면 저희는 그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이용선 위원** 감사원 사무총장님, 지금 산업은행에 대한 합병 건을 포함해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용선 위원** 예, 지금 산업은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건들이……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감사를 한 적은 있는데……

○**이용선 위원** 그중의 하나로 이 합병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원사무총장 최달영**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용선 위원** 지금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을 또다시 이렇게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류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소위원장 구자근** 상임위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당사자 광규택 위원님이 지금 자리에 계시지 않고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이걸 보류로 넘겨서 간사 간 따로 더 깊은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 예.

○**전문위원 정대영**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관계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박종민 권익위 사무처장 박종민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기획조정실장 안준호 기조실장 안준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운영지원과장 김영희 운영지원과장 김영희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300쪽, 연번 1번 과태료입니다.

과태료에 대해서 일반적인 수준의 주의만 기울였다면 발생 안 했을 사유로 패소한 것을 지적하면서 관계법령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는데요. 첫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박종민 이행강제금 과오납금반환금 발생은 패소로 인한 것인데 저희가 신고자 보호를 폭넓게 하다 보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패소를 하게 된 것인데요. 다만 시정요구 유형을 제도개선에서 주의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취지가 저희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고 또 상임위에서도 주의로 의결된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주의를 받아들인다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박종민 예, 그렇습니다. 제도개선의 어떤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박종민 주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대영 302쪽입니다. 청렴권익민간협력 사업입니다.

동 사업이 불용액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편성 발생을 방지하라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면 주의, 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에는 상임위에서는 주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박종민 예, 동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시정 동의하고, 주의 동의하고?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박종민 예.

○소위원장 구자근 잘 받아 주시고, 충분히 인지해 주시고 받아들여서……

○이용선 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대영 마지막으로 303쪽입니다.

부패신고자보호보상, 공익신고제도운영, 정부보조금통합신고센터 및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청탁금지제도운영, 이해충돌방지제도운영 사업 중에서 보상금 지급을 위한 반복적인 인건비 전용 및 내역변경을 지양하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시정과 주의가 있는데 두 가지 중에서 하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구자근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박종민 저희는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에서 주의로 변경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 사업은 2023년도에 훈령이 폐지됨에 따라 이미 종료된 사업인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사업이 종료되었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박종민 예, 2023년 2월에 사업이 폐지돼서 사실상 이제는 시정을 할 사정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그러면 이거는 충분히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다 됐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박종민 예, 상임위에서도 주의로 변경된 사안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 이견 없습니다. 다 끝났다는데.

○소위원장 구자근 주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전문위원 정대영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부위원장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무처장 이정렬 사무처장 이정렬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기획조정관 고은영 기획조정관 고은영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김직동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먼저 전문위원 보고 들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312쪽입니다. 연번 1번, 공통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해 전체적으로 지적하는 겁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출연사업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가 있는데 2개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최장혁 상임위 의견을 수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한 지 3년밖에 안 됐고 사실 저희가 출연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출연비중을 계속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도개선 사항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위원 허영입니다.

작년에도 이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있고 21년에도 똑같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최장혁 예, 그렇습니다.

○허영 위원 그런데 왜 개선이 안 됩니까? 얼마만큼 출연비용이 줄어들었습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최장혁 출연비율을 계속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출범해서 3년도 안 됐기 때문에 직원 수는 170명밖에 안 되고 지금 사실 개인정보 문제가 전 공공기관, 민간 기업, 외국 기업, 구글, 메타, 알리, 테무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출연비중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는데 저희 능력 한도에서는 연도별로 최대한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영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의 칠팔십 %를 진흥원에 예산을 다 주면 그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최장혁 그래서 당초에 출범할 때는 저희가 83% 정도 하다가 사실 작년에는 69%까지 낮췄습니다. 그런데 그게 갑자기 저희가 170명 인원으로 아까 말씀드린 공공기관, 민간, 외국 기업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제도개선 이런 걸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출연비율을 갑자기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인터넷진흥원도 자체 출연기관이 아니고 과기정통부와 공동 출연기관이고 사실 저희 단독 개인정보보호원도 없습니다. 그런 업무상 한계가 있다는 걸 이해,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터넷진흥원 출연기관도 저희 단독 기관이 아니라 과기정통부와 공동 출연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영 위원 그것은 십분 이해는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21년서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국회가 요구한 것인데 찢끔찢끔 출연금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조금 과감한 제도개선을 하라는 차원에서 시정 의견을 낸 거거든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최장혁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공감하면 시정으로 해야 돼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최장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 위원 시정을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 요구사항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최장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안도걸 위원님.

○안도걸 위원 저는 이것 조금 시각을 달리하는데요.

출연사업의 성격이면 출연을 해야 되지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직접 해야 될 일이 있을 것이고 출연사업 같은 경우는 그 해당 업무에 전문성이 있어서 그런 기술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 가지고 넘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원칙을 가지고 해결해야 되지 무조건 이 비율을 높이고 낮추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무슨 업무에 출연을 해 주고 있고 어떤 업무는 위원회가 직접 하고 있습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최장혁 저희가 지금 출연사업을 줄이고 있는 비율은 주로 연구용역 같은 거를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한 기술적인 그런, KISA가 인터넷진흥원인데 기술적인 조사 업무 같은 데 출연, 그런 기술적인 전산 업무에 대한 조연을 받고 있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러니까 현재 하고 계시는 업무 중에서 더 이상 인터넷진흥원으로 출연하지 않고 자체로 해야 돼요. 그 비중 그리고 적정안 있잖아요, 출연 선이. 그걸 얼마로 보시는 거예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최장혁 제가 연초에 과장들을 다 모아 놓고 사실 출연사업 비중을 위해서 매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위원님 앞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얼마라고 딱 비율을 제시는 못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매년 새로운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 기존 업무, 예를 들면 지금 외국기업 조사하는 일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일률적으로 못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매년 출연사업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인터넷진흥원하고 저희가 계속 조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여튼 시정은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시정요구 받아들여서, 지금 사업추진 방식 변경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그런 형태의 과감한 방법들을 고민하셔서, 지금 안도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일응 타당한 부분은 있어요. 전문적인 영역은 전문적인 영역으로 맡겨서 출연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누적돼 온 지적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봐서 시정요구를 받아들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최장혁 매년 회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최장혁 예.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313쪽, 연번 2번입니다. 위원회 정보화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다수 부처의 출연사업을 통합수행함에 따라서 회계적 책임성이 약간 문란하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에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가 있고 이 2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최장혁 저희는 상임위 의견대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 말씀하신 설득 또 그냥 단순하게 제도개선 말고 여기서도 설득……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최장혁 예, 그것 말씀드리면 인터넷진흥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기정통부 그다음에 방통위 3개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저희가 유지보수사업을 저희 예산으로 늘려 주더라도 그 3개 부처 유지보수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당초부터 이걸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이걸 인터넷진흥원에 얘기해서 유지보수할 때 저희만 따로 떼내서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3개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여기가 저희 단독 출연기관 같으면 저희가 단독으로 우리 것만 하라고 하겠는데 3개 부처를 공통으로 보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유지 비용을 공통으로 쓴 부분이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고 이걸 하여튼 저희가 제도개선 내지 시정으로 해서 최대한 이것도 줄여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이 지적사항에 대한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상임위도 그렇고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어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최장혁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부처를 공통으로 지금 서포트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과기부, 사실 주무부처는 과기부고 방통위와 우리와 만나 가지고 유지보수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가르자 하는데 그렇게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한번 제도개선 사항을 발견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과기정통부에 한 번 더 요청을 해야 되네요, 그러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최장혁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알겠습니다. 제도개선으로 하고,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314쪽, 연번 3번입니다. 위원회 정보화 지원 사업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화 체계구축 사업의 인프라 도입 과정에서 계획과 달리 집행했으므로 계획 변경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시정과 주의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최장혁 상임위에서 주의를 주셨지만 또 예결위에서 시정을 놓으시면 저희가 시정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시정 수용한다는 말씀이지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최장혁 설명드리라면 저희가 설명은 드릴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아닙니다. 일단 시정 수용하시고 혹시 또 예산 다룰 때 이런 부분이 다시 오면 더 소상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최장혁 예.

○소위원장 구자근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대영 314페이지, 연번 4번입니다.

이 내용이 아까 안도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별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인터넷진흥원에 출연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에 두 가지가 있는데 주의, 제도개선 두 유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부처 의견 주십시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최장혁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일한 설명이고요. 주의 하시는 거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안도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의를 받습니다.

○안도걸 위원 예.

○소위원장 구자근 알겠습니다. 주의로 하고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연번 6번,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구축사업인데요.

이것도 동일합니다. 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구축사업에서 직접 수행했다는, 필요성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은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고 두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부처 의견 주십시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최장혁 같은 내용입니다. 앞에서 주의를 저희가 수용했기 때문에 이 건도 주의를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알겠습니다. 주의 수용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대영 마지막입니다.

317쪽, 연번 7번입니다. 개인정보기술 표준 개발지원 사업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 과제의 공모 일정 등을 예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를 2023년 2월 8일에 진행했으므로 예고 기간을 준수하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에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고 이 두 유형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부위원장 최장혁 주의를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주의 수용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받아들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환기를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구자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처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부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교육부차관 오석환입니다.

○교육부기획조정실장 박성민 기획조정실장 박성민입니다.

○교육부예산담당관 최윤정 예산담당관 최윤정입니다.

○교육부지방교육재정과장 조훈희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 조훈희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당초 교육부는 이견 있는 사업이 10개였습니다. 10개를 심사할 예정이었는데 정회 시간에 전문위원실하고 교육부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해서, 12개 사업입니다. 12개 지적사항 중에서 제가 하나씩 하는데 4개 정도에 대해서만 이견이 있고 나머지 8개는 시정요구 유형 중에서 높은 것을 수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견이 있는 것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연번 4번입니다.

보통교부금, 지역현안특별교부금,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금, 국가시책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세수결손 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부적절한 불용처리를 시정하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의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정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계 등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특성을 고려하여 삭제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내국세에 연동이 됩니다.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등을 위해 예산의 집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국가재정법 제43조제5항에 근거하여 교부금 집행을 보류한 것입니다. 앞으로 교육부는 교부금 불용 등 결정 시에 재정 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어려운 교육청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여기 지금 오기형 위원님께서 징계 요청이 있었는데 혹시 이 부분

에 대해서 소통이 좀 되셨나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위원님 보좌관실에 찾아가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재정과 관련돼 있는 사항이라 일단 의견은 청취해 주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철회의 말씀은 안 주셨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말씀 주시고 듣고 나서……

안 계시니까 일단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예, 알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이것은 결손 문제니까 보류.

○**소위원장 구자근**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용선 위원** 이 전체를 보류?

○**소위원장 구자근** 예.

○**박수민 위원** 전체 보류.

○**전문위원 정대영** 34쪽, 연번 5번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보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철민 위원** 보류하시지요.

○**소위원장 구자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으로 64쪽, 연번 1번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한국판 뉴딜사업 전면 재검토 및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추진 관련자에 대한 주의 필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는 시정과 제도개선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에 대해서는 부처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교육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중에 1번은 제도개선으로 변경, 2번은 징계를 삭제하고 그 용어를 ‘관련자 조치’를 ‘사업관리 철저’로 변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4년부터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이 준공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지적해 주셨던 물리적 시설 개선 실적이 부각되고 있습니다라는 미래형 학교 전환 요소인 스마트그린 등에 관한 사항도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준공 학교 성과보고서를 통해서 인재 양성이나 디지털 전환 등의 실적이 현장에 확산되도록 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위원님들 의견 듣기 전에 제가 징계 요청을 한 부분이 있어서 먼저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처에서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들어서 단계는 제가 주의로 낮췄지만 이 사업을 처음에 시행할 때 주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좋은 제도입니다. 이게 디지털 기반 학습 혁신으로 해서 스마트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라고 한 거고.

실질적으로 지역에 가 보면 학교 공동화나 또 학교가 저출생으로 인해서 많이 폐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역 학교를 좀 더 스마트하게 디지털 기반 학습을 갖추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내용 들어 보면 그런 것들이 아닌 물리적인 시설, SOC 관련해 가지고 그런 사업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부실하게 관리한 담당자들을 제가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싶었는데 부처로부터 제가 충분히 이해도 듣고 또 이 사업에 관한 방향성을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오랜 기간 진행이 되었고 많은 예산이 투입돼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그러면 적어도 이 사업에 대한 성과 정도는 한번 평가는 해 봐야 될 듯합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주의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박수민 위원** 이 사업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이미 거의…… 내년 예산에는 없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이제는 후속적인 집행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에 대한 어떤 효과성 평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저희 당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여기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 보류를 시켜 주시지요. 이것도 나중의 사후평가를 위해서 한번 보류를 시켜 주십시오.

○**소위원장 구자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67쪽, 연번 4번입니다. 재해보상급여입니다.

사학연금 휴업급여 예산편성 필요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인 교육부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은 휴업급여 예산을 편성할 것에 대해서 교육부의 이견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교육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인 제도개선의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시정요구사항에는 교육부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휴업급여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제도개선 요청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무원 재해보상법 8조와 관련돼 있는 국가공무원이 청구한 공무원의 휴업급여 미도입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준용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에 신분보장의 정도나 질병휴직 후에 직무복귀 가능성, 그다음에 지급받는 보수의 수준, 퇴직연금 등의 제도에 따른 생계보장 면에서 사립학교 교직원도 동일합니다. 일반 근로자보다 유리한 점을 고려하여 기각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휴업급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립학교 교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저희에게 시정 요청해 주시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제도개선 방안을 계속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안드리는 것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제도개선으로 저희는 요청드립니다.

○**곽규택 위원** 곽규택입니다.

말씀하신 취지가 휴업급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 자체가 헌법재판소의 결정하고 안 맞다 이 말씀이신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혹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교육부차관 오석환** 위원님께도 저희가 가서 충분하게 소명을 해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허성무 위원님한테?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습니다.

○**허영 위원** 현재 결정하고 이게 왜 부합하지 않지?

○**소위원장 구자근** 기각시켰으니까, 현재에서.

현재 기각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이 청구한 공무원의 휴업급여 미도입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휴업급여를 예산에 편성하라는 그런 요청하고 동일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확인 소송에서 신분 보장의 정도 그다음에 질병휴직 후 직무 복귀의 가능성, 질병휴직 기간 동안 지급받는 보수의 수준, 퇴직연금 등 제도에 의한 생계 보장 면에서 공무원이 일반 근로자보다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각 결정된 것입니다.

즉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 휴업급여를 주는 이유는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들입니다. 그런데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보수가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위헌 판결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그러면 이 부분을 제도개선으로라도 받아들이고……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저희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여간 사립학교 교직원의 처우 개선이……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다 정도로 해서……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그렇게 용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차관 오석환** 예, 저희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기재부가 이견이 있을 것 같은데요? 휴업급여 예산을 편성할 것.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그래서 위당을 ‘사립학교 교직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이렇게……

○**소위원장 구자근** 그 정도로 하면……

다음.

○전문위원 정대영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교육부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보류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관계자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심사를 계속하기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소위 심사자료 4권에 따르면 다음 심사 순서는 국가교육위원회와 외교부 순서입니다만 두 기관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과 허영 간사님 간 합의에 따라 내일 심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통일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통일부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차관 김수경 통일부차관 김수경입니다.

○통일부기획조정실장 오대석 통일부 기조실장 오대석입니다.

○통일부기획재정담당관 김영일 기획재정담당관 김영일입니다.

○통일부운영지원과장 신혜성 운영지원과장 신혜성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자리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보고 듣겠습니다.

몇 쪽인지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대영 예, 알겠습니다.

통일부도 정회 시간에 전문위원실하고 통일부랑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11개의 유형 선택을 해야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148쪽 KEDO 관련을 제외하고는 시정요구 유형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하겠다고 통일부가 말을 했고요, 그래서 148쪽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8쪽, 연번 3번 KEDO 차관 관련입니다.

북한의 경수로지원 채무불이행 관련해서 북한 정권에 채무상환 촉구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시정과 제도개선이라는 두 유형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통일부가 이견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통일부차관 김수경 저희 기관은 시정요구 유형을 시정, 제도개선에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조 3000억 원의 공자기금 원금 상환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해서 재정 당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서 합리적인 상환 방안을 지속 강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님.

○이용선 위원 이용선입니다.

차관님, 제도개선을 하겠다는데 지금 시정요구는 채무 상환을 받는 걸 목표로 한 방안을 강구하라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채무 상환을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있으니까?

○통일부차관 김수경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저희가 대북 협상력을 가지고 있으려면 KEDO 법인격과 이 채권·채무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KEDO에서 매년 1회 북한에 사업손실비용을 청구하는 서한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촉구해 나가는 방안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용선 위원 북측의 반응은 어떤가요?

○통일부차관 김수경 북측에서는 계속 무응답으로 일관을 했었는데 2011년에 한 번 회신을 했습니다. 경수로사업 종료 책임이 미국에 있다라는 내용으로 한 차례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용선 위원 아마 입장들이 많이 갈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보이는데 어쨌든 북에 대한 협상력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가 털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남북 대화라도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 가능성도 사실 쉽지 않은 게 현재의 형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방금 제도개선하겠다는 것을 수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실성의 문제에 대해서 좀 의문이기는 합니다.

○허영 위원 허영입니다.

이 사안은 현실성의 문제, 하지만 이렇게 혈세가 탕진되고 있는 문제 또 책임소재의 문제 또 현 남북관계 개선 의지의 문제 등 다양한 복합적인 문제가 얹여 있는 문제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하지 말고 간사 간 협의 사항으로 넘겨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보류 의견을 제시합니다.

○박수민 위원 동의합니다. 보류 좋습니다.

○이용선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이 사항은 보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허영 위원 위원장님, 지금 교육부도 그렇고 통일부도 그렇고 사전에 조율을 해서 정부가 높은 수위의 예결위 의견들 내지 상임위 의견들 높은 수위를 받겠다고 말씀을 해서서 크게 합의 보고 넘어가는데 우리 소위 위원님들에게 양해사항을 하나 더 구하겠습니다.

예결위 의견과 상임위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이렇게 세부 검토하지 않고 넘어갔을 경우에 이것이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예결위 위원님의 의견들이 과소 논의가 되어서 의견이 좀 무시되거나 이렇게 반발이 있을 수가 있는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 중에서 추후에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 협의 사항에 대해서 좀 존중해 주시고 따라 주실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예, 200% 공감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통일부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동승철 안녕하세요? 민주평통 사무차장 동승철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운영지원담당관 이우식 안녕하세요? 사무처 운영지원담당관 이우식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자리해 주십시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151쪽, 연번 1번 자문회의 운영입니다.

분과위원회의 경우 자문위원 출석률이 최근 5년간 평균 65.8%, 2023년에는 59.6%로 저조하므로 분과위원회 회의 참석률 저조를 개선시키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주의와 제도개선 두 유형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동승철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 그러면 주의를 받으시지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동승철 예.

○이용선 위원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강구해서 이렇게 출석률이 저조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동승철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사무차장 동승철 예.

○전문위원 정대영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재외동포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외동포청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재외동포청 차장 변철환입니다.

○재외동포청기획조정관 오진희 재외동포청 기획조정관 오진희입니다.

○재외동포청기획재정담당관 홍명화 재외동포청 기획재정담당관 홍명화입니다.

○재외동포협력센터경영기획실장 이미경 재외동포협력센터 경영기획실장 이미경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자리해 주십시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158쪽, 연번 1번입니다. 워킹홀리데이 이행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외교부로 이관하라는 제도개선 유형이 있는데 이 시정요구에 대해서 부처의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워킹홀리데이 이행 사업의 외교부 이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워킹홀리데이에 참석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최소 6개월, 대개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기 때문에 이분들도 유학생이나 일반 재외국민과 함께 우리 재외동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재외동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적된 바와 같이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은 외교부에 있고 관리는 재외동포청에 있으면 이게 효율적인 집행이 어렵지 않냐 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 향후 집행해 나가면서 외교부로 통합하는 문제를 외교부 측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개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일부 수용하는 입장임을 보고드립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혹시 이 부분에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 위원 이용선입니다.

동포청 입장이 타당한 듯 보이는데요. 이것을 굳이 외교부가 가져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교부와 잘 상의해서 동포청이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곽규택입니다.

지금 동포청 입장에서는 이 사업은 계속 하시되 외교부하고 협의는 하시겠다 이런 취지이신가요?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그렇습니다. 그런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ですよ 외교부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보는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동포청으로서는 일단 이 사업은 외국에 1년 이상 나가게 되면 재외동포로서 저희들이 관리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일차적 판단입니다. 그렇지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부하고 한번 협의는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취지의 보고를 드립니다.

○**곽규택 위원** 다른 부처 같은 경우에도 협약은 외교부에서 하지만 실제 사업관리는 각 해당 부처에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그렇습니다. 특히 외교부는 저희 상위 부처기 때문ですよ. 또 그 관리를 재외동포청에 아웃소싱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허영 위원** 허영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을 낸 핵심은 뭡니까? 지적사항에 외교부로 사업을 이관하는 것이 맞다라고 한 지적은 왜 나온 겁니까?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저희 동포청은 외국 정부하고 직접 접촉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외교부 본부가 직접 하기 때문에 외국 정부와의 접촉은 외교부를 통해서 하는 약간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하지 않으셨나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영 위원** 분명히 이런 의견을 낸 지적사항들이 타당한 이유가 있을 텐데, 워킹홀리데이 이것은 해외로 나가는 내국인과 국내에 들어오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설명회,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현지 생활 안전 및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예, 그렇습니다.

○**허영 위원** 그래서 동포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해외로 나가는 내국인을 사업 대상으로 하고,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도 동포청 관할 사항인가요?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저희 워킹홀리데이 관련 예산 중 일부는요. 대부분이 외국에 나가는 우리 젊은이들에 대한 인포센터 운영 등으로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요. 일부는 우리 재외공관에 배정이 돼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으로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우리 공관에 문의를 할 때 담당관을 배치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런 예산으로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영 위원** 재외동포청이 그런 사업을 내국인 또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미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그렇습니다.

○**허영 위원** 그런데 지적사항은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도 사업 대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해서 여하튼 이것은 재외동포청의 업무 범위 특성상 맞지 않다라고 하는 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소를, 외교부로부터 명확하게 업무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외교부하고 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영 위원** 저는 동포청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제도개선 이것 받아들이시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신 부분들을 가지고 외교부하고 잘 상의해 보십시오.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159쪽입니다. 연번 2번, 재외동포 교류협력 강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실적보고서 제출 관리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입니다.

다만 시정요구 유형이 주의, 제도개선 두 유형이기 때문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제도개선으로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제도개선으로 정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건의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실적보고서를 늦게 제출한 일부 동포단체들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 재외동포청이 출범하면서 보조금이 일반 재단에서 정부에서 관리하는 보조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법적인 성격이 변경됨으로써 저희들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새로 구축했습니다. 9월에 구축을 해서 동포단체들에 설명을 했는데 일부 동포단체들이 보조금통합관리망 사용에 대해서 미숙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 실적보고서 제출이 늦은 점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동포단체들에 대해서 새로 설치된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대한 교육을 잘 실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는 단체에 대해서는 차년도 보조금 배정 시에 일정한 페널티를 줌으로써 앞으로 실적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상임위에서 의결해 주신 바와 같이 제도개선으로 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용선 위원** 이용선입니다.

혹시 재외동포단체가 보조사업에 대한 실적보고를 안 하거나 이런 사태는 없습니까? 조금 늦어지는 경우 정도지……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배정을 할 때 반드시 이런 보고를 하도록 했고 대부분의 단체들이 처음 하는 단체는 별로 없고 한인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이기 때문에, 경험이 다 있기 때문에 아예 안 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그런데 저희 기준에, 형식이나 양식에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이 일부 있긴 한데 작년에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조금통합관리망이 새로 설치됐는데 그 부분에 익숙하지 않은 점이 있어서 조금 늦어지거나 양식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동포단체들에 대해서 이 부분의 교육을 잘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용선 위원** 제가 보니까 16개 단체 중 5개 단체가 기한을 못 지켰다고 돼 있는데 해외에 있는 단체 중에서는 특히 재외동포청이 많이 관계하는 CIS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데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올해가 160주년……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이주 160주년입니다.

○이용선 위원 러시아 이주 160주년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념사업이 여러 군데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단체마다 가령 실무 역량의 편차도 꽤 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보면 아마 기한 준수만이 아니라 보고서의 질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 잘 안내해서 가지고 관리를 잘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예, 위원님 주신 말씀 유념해서 공관 측에 잘 전달해서 공관 측이 잘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면 제도개선으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160쪽입니다. 연번 3번, 재외동포 교류협력 강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해외 동포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135개 사업을 선정하였는데 이 중 17개 사업의 경우 전혀 수행하지 않고 지원받은 금액을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이에 행사 지원 시 심의를 강화하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이 주의와 제도개선 2개가 있어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작년도에 재단에서 동포청으로 넘어가면서 그 과도기에 조금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 해외 동포단체들이 기념성 행사를 신청할 때 그 행사의 실현 가능성 그리고 동포단체의 능력을 잘 평가해서 저희들이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약에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 자기들이 약속한 대로 실행을 하지 않고 반납할 경우에 차년도 예산 배정에 참고를 하는 등 일정한 페널티를 줌으로써 앞으로 제도개선을 잘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의결해 주신 대로 제도개선으로 정하여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 위원님.

○허영 위원 허영입니다.

이게 앞서 2번하고 3번은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청으로 승격되고 그렇게 해서 더 책임이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실제 사업은 재단 때부터 쪽 진행되어 왔었던 것이지요?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그렇습니다.

○허영 위원 이게 재단에 있을 때하고 동포청이 됐을 때하고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사실상은. 그래서 재단이 동포청으로 전환됐다고 해 가지고 실적 관리 문제나 이렇게 전혀 사업을 하지 않고 반납하는 사례 자체에 대한 것들 이걸 명확하게 시정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그렇습니다.

○허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정조치에 준하는 강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노파심에서 드렸습니다.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 이용선입니다.

궁금해서 여쭙보겠는데요. 17개 사업, 물론 전체 135개 중 비율로 보면 10% 남짓이기는 합니다만 이 각각의 단체들이 신청할 때는 아마 나름의 목적과 이유가 뚜렷해서 신청을 했을 것 같은데요. 17개 사업이나 그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반납을 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이거든요.

이 이유가 뭔가요? 동포청 전환 과정에서 혹시 소통이나 이런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건지, 왜 이런 일이 발생했지요?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그 부분은 조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동포청이 6월 달에 출범했기 때문에 6월 달에 출범할 때 그때 한창 예산 배정을 많이 하는 시기인데요. 그 때 동포청도 자리를 잡아 가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재외동포단체들의 사업에 대한 관리 부분에서 저희가 혹시 허점이 없었는지 한번 살펴는 보겠습니다만……

이런 동포단체들이 행사 예산을 신청을 했다가 반납하는 경우는 사실은 늘 있어 왔습니다. 있어 왔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재외동포청 출범을 계기로 더욱더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용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숫자가 적지 않기 때문에 단체의 사정 때문에 취소하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는 전쟁 등등 특수한 상황이라서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해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작년에 출범과 관련된 상황들이 아마 이 추진과 관련돼서 좀 문제가 됐을 소지도 있기 때문에 동포청에서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예, 재외동포청이 출범한 지 1년이 됐기 때문이에요, 저희들이 이런 부분 더욱 꼼꼼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안도걸 위원님.

○안도걸 위원 안도걸입니다.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외동포청에서 파악하고 있고 또 이렇게 재정 지원의 대상이 되는 해외 동포단체가 어느 정도 될까요? 그리고 이 사업은 135개 사업을 선정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모율이랄까요, 경쟁률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 주실래요?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글썄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추후에 저희들이 알아보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부분의 동포단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냥 일정한 기준으로 골고루 뿌려 주는 건지, 아니면 사업 목적을 분명히 해서 공모 과정을 통해서 되는지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이 사업의 불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왜 발생했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사업관리 대상에 대한 관리체계를 조금 파악을 해서 가지고 저한테 따로 보여 주시든지 하십시오.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그 부분은 안도결 위원 포함해서 우리 예결위원들한테 전체 그 자료하고 해서 주십시오.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그러면 제도개선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161쪽입니다. 연번 4번, 재외동포 교육문화 지원 사업입니다.

재외동포 학습자와 한글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여 운영하는 스터디코리안 운영사업이 교사인증과정의 수료율이 낮고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학습의 수강 인원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므로 스터디코리안 운영사업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가 있어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이 부분도 상임위에서 의결해 주신 대로 제도개선으로 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왜냐하면 지적해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 청에서는 스터디코리안이라는 프로그램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모바일 최적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타 기관과 협력해서 신규 콘텐츠를 개발해서 좀 더 흥미롭고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영어권 서비스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어서요 앞으로 더 많은 교사들과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임위에서 결의해 주신 제도개선으로 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결 위원님.

○안도결 위원 이 사업은 제가 보건대 일종의 학원 같은 사업인데 이것이 재외동포청, 즉 공무원이 직접 할 만한 사업입니까?

○재외동포청기획조정관 오진희 이것은 저희가 스터디코리안이라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한글학교 교사 내지는 우리 동포 청소년들이 한글을 배우는 데 필요한 교재나 교육 자료 이런 것들을 게시하는 웹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학원의 개념은 아니고요 한글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 프로그램입니다.

○안도결 위원 그러니까 학원이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교재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사업 같은데 이걸 공무원들이 하기에 부적합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즉 재외동포재단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재외동포재단은 완전히 없어졌습니까? 그리고 그 기능이 100% 다 공무원 조직으로 흡수가 됐습니까?

○재외동포청기획조정관 오진희 저희가 직접 교재 개발을 하지는 않고요. 일단은 저희 방향성을 한글학교의 교사들이나 한글학교의 의견을 들어서 어떤 쪽에 프로그램이 강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방향성을 정한 다음에 그걸 토대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안도결 위원 외부 발주를 줘서 실제 사업 수행 기관이 따로 있는 겁니까?

○재외동포청기획조정관 오진희 예, 그렇습니다.

○**곽규택 위원** 곽규택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중복적인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재외동포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한국어 교육 관련된 사이트가 세종한국어, 세종학당에서 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한국어 교사하고 학습자가 대부분 그것을 이용하는 것 같은데 이 스터디코리아라고 하는 게 재외동포청에서 별도로 개발한 교육과정인가요?

○**재외동포청기획조정관 오진희** 한글학교하고 세종학당하고 약간 목적이 다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아까 차장님께서 타 기관하고 협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세종학당이 포함되고요. 세종학당은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가르친다는 것은 공통점이 있지만 한글학교의 경우에는 단순한 한국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이라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역사, 문화 이런 부분에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은 맞지만 어떤 소재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곽규택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이용선 위원님.

○**이용선 위원** 저도 하나 여쭙보겠습니다.

지금 해외에 한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고 또 한국어를 가르치는 게 외국인 성인들은 주로 세종학당 쪽에서 가르치는 작업들이 본격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국제한국어재단에서 초중고 학생들 교육과정의 교재라든지 이런 지원을 통해서 한글 보급이 꽤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것은 동포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국제한국어재단의 한글 교육하고의 연계나 협력 같은 건 없습니까? 이걸 청소년 대상으로는 같은 것 같은데.

○**재외동포청기획조정관 오진희** 그 부분은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조금 확인을 한 다음에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선 위원** 그리고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너무 학생 숫자가 격감하고 있어서, 물론 동포청이 출범하는 과정에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21년부터 쭉 보면 절반 이하로 학생수가 줄고 있어서 이 사업이 지속가능한지가 조금 의문이라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만약에 지속가능성이 부족하다면,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은 전 세계 46개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한글보급운동이 아주 활성화돼 있거든요. 그것과 연계하는 것이 훨씬 효율성이 높겠다 싶어서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같이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다른 의견 없으면 제도개선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164쪽, 연번 1번 재외동포 영사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 역시 외교부에서 소관하는 것이 적절한 측면이 있으므로 소관 업무 및 예산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게 아까 나온 158페이지, 1번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158페이지의 1번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채택하셨습니다. 부처는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부처 의견 들겠습니다.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순회영사 서비스 사업의 외교부 이관 필요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사업 또한 상임위에서는 삭제를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상임위 결정대로 삭제로 하여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순회영사 서비스 사업의 대부분이 저희 동포청 소관 사업입니다. 외교부 소관 사업은 여권 정도에 불과하고요. 병무라든지 호적이라든지 국적이라든지 혹은 국세, 모든 것이 동포청 소관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순회영사를 가게 되면 동포 간담회를 늘 개최를 합니다. 동포 간담회를 하게 되면 저희 동포청에 대한 각종 건의사항을 저희들이 또 수렴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이 부분은 저희 동포청에서 계속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결정해 주신 대로 삭제로 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상임위 삭제는 여기 안 올라와 있는데……

일단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상임위 삭제되었다라고 표기가 돼 있나? 그렇지 않은데?

○전문위원 정대영 저희 책자에는 상임위가 의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삭제라는 것은 상임위에서 논의를 했는데 의결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그러면 시정요구사항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입니까?

○전문위원 정대영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그렇지요?

○허영 위원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상임위 의견 존중해 주면……

○허영 위원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이 연관되어 있는 사안이지요?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순회영사 서비스 지원금의 효율적 관리 부분도 일부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허영 위원 그러니까 순회영사 서비스의 소관 사안에 대한 지적이 1번이고 순회영사 서비스를 활용하면서 했던 예산 사용에 대한 지적이 2번이지 않습니까?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그렇습니다.

○허영 위원 그렇지요?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예.

○허영 위원 연관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삭제를 요청을 하시는 건데 상임위 의결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순회영사 서비스가 100% 재외동포청의 소관 업무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까?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여권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입니다.

○허영 위원 후원?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여권이요.

○허영 위원 여권. 여권을 제외한?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예.

○허영 위원 여권은 아직 외교부 본부 소관 사항으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용선 위원 제가 외통위를 21대에 쭉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잘 몰라서 여쭙보는데 혹시 재외동포재단 시절에도 했습니까?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재외동포재단 시절에는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때는 재외동포영사국에서 이 사업을 관리했었습니다.

○이용선 위원 했고, 청으로 독립하면서는 영사국 업무가 넘어왔습니까?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그렇습니다. 재외동포재단에서는 정부가 하는 기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호적이나 병무나 이런 기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삭제 요청이 있습니까라는 앞에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제도개선으로 남겨 두고 재외동포청에 꾸준한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 위원 아니, 상임위 쪽의 의견을 좀 확인해서……

이것 상임위에서 한번 다뤘습니까, 외통위에서?

○재외동포청차장 변철환 예, 그 지적해 주신 위원님께서 삭제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는 삭제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용선 위원 더군다나 청이 독립하면서 업무분장이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들을 외통위 쪽에 좀 확인을 해서 삭제가 타당하면, 제가 볼 때는 업무분장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보류하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보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수민 위원 1번, 2번 다 같이 보류……

○전문위원 정대영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2번 다 보류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대영 마쳤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재외동포청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보류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동포청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국방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방부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차관 김선호 안녕하십니까? 국방부차관 김선호입니다.

○국방부기획조정실장 이영빈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이영빈입니다.

○국방부계획예산관 신태복 국방부 계획예산관 신태복입니다.

○국방부예산운영담당관 구형모 구형모 예산운영과장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179쪽, 연번 5번입니다. 시설정책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미등재 건축물이 국방부 전체 건축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건축법 등의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있고 국방부가 이 건축물을 양성화하기 위해서 매년 기본조사설계비 등을 투입하여 양성화하고 있으나 그 실적이 미흡하므로 미등재 건축물의 조속한 양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다만 시정요구 유형이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국방부차관 김선호 상임위에서 의결된 대로 시정으로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그런데 이런 노력들은 꾸준히 해야 되는 것도 맞고, 그렇지요? 아직 많이 남아 있지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그렇습니다. 아직도 한 5만 동 정도 남아 있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그렇지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소위원장 구자근 알겠습니다. 시정으로 받아들이고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188쪽, 연번 24번 주요기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에 대해서 현재 운영 중인 한시조직 등 정비 및 규정에 부합하는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국방부차관 김선호 이것도 상임위에서 의결된 주의로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상임위에서 주의를 뒀습니다.

위원님께서 혹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도개선보다는 주의로 확실하게 더 하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거기에 맞는 규정과 절차에 맞춰서 그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예,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189쪽, 연번 25번 간부확보장려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단기복무장려금·장려수당 지급의 형평성을 확보하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가 있고 두 가지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국방부차관 김선호 이것도 상임위에서 의결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허영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소위원장 구자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전문위원 정대영 191쪽, 연번 28번 기본급식 사업입니다.

동 사업에 대해서 영외자 급식비 법령 불일치 해소 및 정당한 보상 지급 방안을 마련 하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 하 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국방부차관 김선호 상임위 의결된 제도개선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내용을 좀 더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허영 위원 이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구자근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지금 간부들의 급식은 영외 급식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급식비를, 훈련이나 작전을 하게 될 경우에 부득이하게 부대 안에서 식사를 하게 되 는데 그 비용을 간부들이 부담을 합니다, 직접.

그런데 지금 간부들이 영외 급식비로 받는 것은 한 달에 13만 7000원을 받습니다. 이 게 보면 한 끼당 한 4700원 정도의 계산인데 영 급식을 하게 되면, 이게 매끼를 먹으면 13000원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 8000원 정도를 자기 돈을 내고 가서 식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나머지 8000원 분야를 전부 국가에서 보전을 해 줘서 자기 돈을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저희가 사실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 소요 예산이 한 800억 정도로 보이는데 현재 기재부하고 여러 가지 협의하면서 재정적 문제 때문에 올해도 한 125억 정도만 반영이 된 상태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저희가 기재부하고 좀 논의를 해 가면서 점차적으 로 재원 확보하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위원님들 다 동의되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좀 더 올려야 되겠는데, 더 많이 받으셔야 돼. 기재부 노력 좀 해 주셔야 돼.

○허영 위원 허영입니다.

기재부차관님!

이것은 제가 운을 안 댔 게 상임위원회에서도 하여튼 이 문제 그리고 여타의 장병 월 급은 지금 사실상 공약한 대로 실행되고 있는 반면에, 초급 장교라든지 부사관들이 이탈 하고 있고 또 정원 모집에도 50% 미만으로 지금 모집 자체도 굉장히 어려워서 정말 이 렇게 가다가는 군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고 있 습니다. 그런 어떤 모집 정원에 미달된 그런 사태들은 장교들과 부사관들의 처우에 있어 서의 각종 차별과 부족함에 기인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문제점 이 거론됐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국방부 내년도 예산에 사실상은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원래 영외자는 출퇴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하루 한 끼 먹을 수 있는 식대를 제공을 하는데 이분들이 영외에 있다가 혼련 때문에 영내에서 근무하면서 세 끼를 다 먹어야 되니까 그 두 끼 식사분도 달라는 이야기인데 저희가 한꺼번에 이 부분을 반영해 줄 수가 없어서 현재 한 20% 정도 간부에 대해서 반영을 했고요. 한꺼번에 갑자기 100%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영 위원 저희가 그런 걸 요청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신경을 써 달라 그런 거니까.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알겠습니다.

○허영 위원 기재부차관님, 여기서 좀 근거 있게 의지를 좀 피력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지난번 예결위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들도 초급 간부의 근무 여건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복무장려금도 최근 한 3년 내 2배 이상으로 올렸고 그다음에 1인 1숙소, 숙소 개선 부분도 계속하고 있고요. 하여튼 급식비가 됐든 주거가 됐든 복무장려금 인상이 됐든 전반적으로 처우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확인했습니다.

이것 제도개선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195쪽, 연번 33번 국방행사지원 사업입니다.

국군의 날 행사 예산은 당초 79억 8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국방부의 행사 규모 확대에 따라 추가적으로 22억 5900만 원을 타 사업으로부터 전용·조정하여 총 99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로부터 예산에 부합하는 국군의 날 행사에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동그라미에는 주의, 시정이 있어서 이 두 개 유형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시고, 두 번째 동그라미는 징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부처의 이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국방부차관 김선호 상임위에서 의결된 대로 주의로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주의하고 징계도 있는데.

○국방부차관 김선호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80억 정도 예산인데 22억 정도가 작년에 전용해서 추가적으로 됐습니다.

위원들께서 상임위에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의 효율적 집행과 계획을 해야 된다는 지적사항에 저희가 동의를 했고 향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작년에 이게 좀 됐던 것들 중의 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 행사 준비하면서 추가적으로 됐던 부분이 행사용역비라고 전체적인 시설하고 이런 걸 설치하는 용역을 줘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용역비가 저희가 판단했던 것보다 좀 많이 들었고, 행사 중에 해외에서 참전했던 용사들을 초청을 해서 행사에 참석시키는 것들을 최초 계획보다 좀 더 많은 인원과 대상을 하다 보니까 행사 참석에 대한 비용들이 거기서 좀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올해도 지금 현재 국군의 날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것들에 대해 유의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그것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금 잘 챙기고 있습니다.

이것 주의로 해 주시면 이러한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허영 위원 허영입니다.

제가 국방위원이기 때문에 조금 더 특별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징계 의견까지 있는 지적사항입니다. 원래 국군의 날 행사는 5년마다 대규모 행사를 1회,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과 더불어서 5년마다 대규모 행사를 1회 실시를 하고 나머지 기간은 소규모 행사로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것을 바꿨습니다, 훈령을 바꿔서. 그래서 국방부장관의 판단에 따라서 대규모 행사를 연례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바꿨습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전용을 통해 가지고 100억 원의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했고 또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낙하하다가 다리 부러지고 또 준비하다가 부상하고 비전투 손실 인력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이것이 군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 자체로 전투 행사가 아닌데 비전투 인력, 이런 행사를 통해 가지고 전투 인력의 손실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애초에 정말 이런 사업들은…… 아니, 좋습니다. 멋지게 하는 것 좋습니다. 한번 정도 해 가지고 위용을 과시하고 나머지는 정말 이런 대규모 동원을 통한 행사보다는 신무기, 정말 위용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소규모로 해 가지고 국군 장병들이 다치고 또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동원 체제들을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지적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그냥 주의로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징계 의견은 조정을 소위원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여하튼 시정 정도 해서 애초의 그런 국회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국방부가 받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동의하시지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여기에서 시정으로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그것은 받아들여서 거기에 맞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주의, 시정? 시정으로 받아 주시지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소위원장 구자근 시정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196쪽입니다. 금방 허영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국군의 날 대규모 행사 개최 빈도 및 주기를 조정하라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시정, 주의, 제도개선이 있는데 이것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영 위원 시정으로 하시지요.

○국방부차관 김선호 예, 알겠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예.

○전문위원 정대영 마지막으로 198쪽입니다. 연번 36번입니다. 일반훈련 사업입니다.

동원훈련에 대해서는 훈련보상비가 지급되는 반면 동미참·지역예비군훈련에 대해서는 훈련보상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훈련보상비 지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과 제도개선 두 가지 유형이 있고 한 가지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국방부차관 김선호 상임위에서 의결된 제도개선으로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것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동원훈련이라고 하면, 한 3박 4일 정도 소집해서 하는 훈련은 그동안 훈련비를 8만 2000원 정도 지급을 했는데 그 훈련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보충훈련은, 동미참훈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4일 정도 하는데 그런 것은 별도로 훈련비 지급을 못 했는데 그 필요성을 저희가 제기를 했고 그 동미참훈련 대상 인원이 1년에 한 3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도 이번에 저희가 건의하고 기재부가 그것을 받아들여 줘서 1일 1만 원 정도로 해서 4일 훈련하면 4만 원 정도는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동미참훈련이 그동안 수차례 반영하려 했지만 못 했던 것을 올해 기재부가 좀 어려운 재원하에서 해 줬기 때문에 기재부에 감사를 드리고.

아마 이것을 한 번에 동원훈련처럼 8만 원 이상씩으로 올려 가는 것은 어렵다는 것은 저희도 알기 때문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제도개선해 나가면서 그 재원을 좀 더 확충해 나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도개선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정대영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위원장님, 저희 재정 당국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169페이지의 연번 2번입니다.

169페이지의 연번 2번 시정요구사항에 ‘국방부는 민간조리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특수지역근무수당에 대한 지급 근거 및 지침을 마련할 것’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민간조리원에 대해서 특수지역근무수당을 신설하라는 시정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간조리원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22년도에 월 7만 원 규모의 교통수당을 이미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조리원 처우 개선을 하기 위해서 딱 집어서 특수지역근무수당을 신설하라는 이렇게 지적을 하시기보다는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정도로 좀 포괄적으로 해 주시면 추후에 저희가 교통비 수당 신설이나 공무직에 대한 복리후생 3종 세트를 추가로 어떻게 할지 여부 등 조금 폭넓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세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국방부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 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병무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병무청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차장 최규석** 병무청 차장 최규석입니다.

○**병무청기획조정관 김용무** 병무청 기획조정관 김용무입니다.

○**병무청기획재정담당관 김인환** 병무청 기획재정담당관 김인환입니다.

○**병무청기획재정담당관실 배재호** 결산 담당 배재호 사무관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자리해 주십시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209쪽, 연번 1번입니다. 병역의무자지원 사업입니다.

동 사업 중 사회복귀준비금 지원 사업의 경우 2023년도 예산은 865억 5700만 원이며 이 중 661억 6100만 원을 집행, 203억 9600만 원 불용됨에 따라서 예산이 과다하고 불용이 많다는 것을 시정하라는 지적입니다.

시정요구 유형이 2개 있습니다. 주의와 제도개선이 있는데 2개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병무청차장 최규석** 동 사항은 177쪽 국방부 3번 건하고 동일 건입니다. 그래서 국방부 건은 제도개선으로 심사한 결과를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그러면 국방부 177쪽도 같이 설명해 주셔야 되지요.

○**병무청차장 최규석** 177쪽의 국방부 3번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아니, 그러니까 그걸 설명해 달라고요. 이것 지금 우리가 돌아가서 그 페이지를 보시라는 겁니까, 그러면? 그 설명 내용을 이야기를 하시고 여기하고 같이 연관되는 건을 말씀해 주셔야지.

○**병무청차장 최규석** 국방부 건은 22년도부터 병 내일준비적금이 들어가 있는데 76.2% 집행을 해서 1570억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동일 건으로 저희 이 사업은 사회복지요원들한테 내일준비적금을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 가입한 금액에 대해서 매칭금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국방부는 병에 대해서 지급하는 거고 병무청은 사회복지요원에 대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해서 동일 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이해가 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제도개선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대영**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위원장님, 기재부에서 또 한 말씀……

209페이지에 바로 밑에 있는 2번입니다.

209페이지의 2번은 시정요구사항이 ‘병무청은 경제적 요인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지 못한 사회복지요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기존의 현역들하고도 조금 채우 개선에 문제가 되고 다른 조건들은 다 똑같습니다. 병장의 봉급은 현재 내년 기준으로 150만 원이고요, 최대 내일준비적금 매칭률이 55만 원으로 똑같은데 150만 원을 받으면 거기서 맥시멈 55만 원을 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요원에 대해서 추가로 정부가 지원한다 그러면 이것은 현역하고 똑같이 마찬가지로, 현역도 이런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요원에 대해서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이야기하시기보다는 ‘병무청은 경제적 요인 등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지 못한 사회복지요원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현재 지금 지적사항에 대한, 사회복지요원의 가입률은 87.5%로 나와 있는데 24년 6월 기준으로는 이미 91%까지 가입률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평균 가입 금액도 24년 6월 기준으로 38만 원으로 현역하고 비슷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역들 같은 경우도 저희가 국방부하고 같이 병장들 월급을 다른 데 쓰지 말고 장병내일준비적금으로 들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요원에 대해서도 같이 병무청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을 기존의 사회복지요원들이 받는 봉급을 가지고 가입을 하도록 조금 더 유도를 하고 교육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그렇게 합시다. 가입률을 높이도록……

○허영 위원 그런데 여기 지적사항을 보면 병영 내 합숙생활을 하는 현역병과 달리 사회생활을 하는 사회복지요원은 생계 곤란 등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서 적금에 가입하지 못하여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요원 중에서는 사회복지요원이 된 원인이 일률적으로 다 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의 지적은 경제적 형편에 의해서 가입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부분들을 지적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입률을 높여야 된다고 하는 지적사항으로 통일해서 수정하게 되면 상임위 지적사항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기재부차관님이 어떤 문제의식인지는 충분히 고려가 됩니다. 되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서……

○소위원장 구자근 지금 기재부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동의는 가고……

○허영 위원 그런데 전혀 다른 문제예요.

○소위원장 구자근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형편이 어려운, 그렇게 처한 우리 젊은 청년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 제도가 또 다른 방향에서 충분히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다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 여기 딱 사회복지요원 할 때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방향에서 좀 더 논의를 해 봐야 되지만 싶은데.

○허영 위원 동시에 병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적금에 가입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하고 가입률 제고 방안도 검토할 것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야 동시 충족이 되지……

○소위원장 구자근 그렇지. ‘경제적’을 앞에 두고 가입률만 높인다는 것은 서로 앞뒤가 배치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네, 용어상.

○박수민 위원 박수민입니다.

그러면 ‘경제적 요인 등을 감안하여 가입률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 이런 정도……

○소위원장 구자근 방금 취지는 충분하게, 차관님이 우리 허영 간사님 이야기가 충분히 이해가 가지 싶은데.

○기획재정부제2차관 김윤상 예, 청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사실은 병무청으로 한정하게 되면 조금 그게 되지만 사실 교육부가 됐든 고용부가 됐든 청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해서 만약에 이런 어려운, 사회복지무요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사실은 병무청과 관계 없이 약간 다른 프로그램에서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그렇지요. 그런 제도가 너무 많으니까. 내가 말씀드린 게 그건데……

○박수민 위원 병무 차원에서는 어차피 병무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야 되니까 어렵지요. 그러니까 타 부처가 섞여야지.

○허영 위원 그런데 이것은 만약에 가입률을 높일 것으로만 정리가 되면 상당히 왜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아니, 지금 구십몇 %가 넘었다니까…… 그러니까 앞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이 부분이 뒤에 멘트가 하나 더 들어가 주고 ‘가입률을 높일 것’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이용선 위원 표현 그대로 되 보시지요.

○박수민 위원 ‘경제적 요인 등을 감안해서 가입률을 높이게 노력할 것’ 하면 다른 수단도 가능할……

○소위원장 구자근 용어 정리는 여기서 마무리 짓지 말고 저희들 일단 보류해 놓을 테니까 용어 정리를 그렇게 해 주십시오.

끝났습니까?

○전문위원 정대영 예,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병무청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방위사업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차장 강환석입니다.

○방위사업청기획조정관 홍미루 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 홍미루입니다.

○방위사업청재정담당관 이용훈 재정담당관 이용훈입니다.

○방위사업청재정담당관실 최현석 결산 담당 최현석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221쪽, 연번 7번입니다. 보라매(R&D) 사업입니다.

보라매 사업은 패키지시설사업의 사업비를 2개 세부사업, 즉 보라매(R&D) 사업과 보라매(최초양산) 사업으로 나누어 편성한 결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추가 지연을 방지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시정요구 유형이 주의와 제도개선 두 가지가 있어서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우리 기관은 시정요구 유형 주의와 제도개선 중에서 주의로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동일한 지적 건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충분한 심의 끝에 주의를 주셨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예, 상임위 의견 존중해서 주의로 하신답니다.

주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225쪽입니다. 연번 16번, 소화기음향탐지기 사업입니다.

동 사업의 경우 총 일곱 차례 유찰 중 여섯 차례에 대해서 전력화 시기를 연기하는 내용의 소요수정 외에는 별도의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복 유찰 사업에 대한 면밀한 원인 분석 및 사업 재추진 여부 등 신속 결정을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 시정과 주의가 있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시정요구 유형 시정과 주의 중에서 시정으로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 건은 동일 지적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주의로 조정하였으나 예결위 다수 위원님들이 시정으로 또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시정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예, 시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다음은 229쪽입니다. 연번 24번, 잠수함구조함-Ⅱ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시험평가 과정 중 일부 장비의 고장이 발생하고 시험평가 수행을 위해 필요한 국외 기술인력의 지원이 늦어지면서 시험평가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따라서 사업 지연이 발생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시정요구 유형에 시정과 제도개선이 있는데 두 가지 유형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시정요구 유형 시정과 제도개선 중에서 시정으로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앞의 건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예결위 위원님들의 시정 요구가 있어서

시정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받아들이시고.

○전문위원 정대영 마지막으로 233쪽입니다. 연번 33번, 신속연구개발(R&D) 사업인데요.

동 사업에 대해 국회에서 심의 의결된 총사업비 규모를 과다 초과한 신규 과제 선정 개선 필요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 유형으로는 시정과 주의가 있고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부처 의견 듣겠습니다.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시정요구 유형 시정과 주의 중에서 시정으로 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앞의 건과 마찬가지로 예결위 다수의 위원님들이 시정 요구를 하셨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허영 위원님.

○허영 위원 이것은 저는 징계 의견을 내고 싶은데요. 문제점을 느끼고 있었고, 이게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해도 엄청나게 침해한 사업입니다. 인정하시지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그렇습니다.

○허영 위원 소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민 위원 박수민입니다.

이것 왜 이렇게 하셨나요?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이게 지금 저희가 애초에 신규 과제 내역사업에…… 총액으로 예산을 받았습시다마는 내역에 3개 과제를 받았는데 지금 북한의 위협 등 때문에 산하기관에서 무인기 소요가 되게 많았습니다. 소요가 많이 올라와서 저희가 5개 사업으로 신규 과제를 정했고 앞으로 향후에 3년 동안 집행할 총사업비 규모가 좀 많아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관계관님, 지금 허영 간사님께서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면서 다 소소하게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이것은 보류하겠습니다. 보류하고 적어도 허영 간사님 포함 국방위원님들과 다시 소통을 잘해서 그렇게……

○허영 위원 저는 명확하게 징계 의견을 제시합니다.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위원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구자근 예.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허영 위원님께서 징계 요구가 있었는데 그 논의를 상임위에서 깊이 논의해서 상임위에서는 징계는 이게 처음 있는 일이고……

○허영 위원 여기는 예결위입니다.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그래서 허영 위원님께, 충분히 저희가 의원실에 협의를 해서 징계를 철회한 걸로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아직까지 덜 됐습니다. 그것 자꾸 혼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하여튼 일단 보류했습니다. 보류했으니까 더 노력하십시오.

○방위사업청차장 강환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보류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은 저와 전문위원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청 관계관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관계관께서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지원과장 김양수 안녕하십니까? 5·18진상규명위원회 조사지원과장 김양수 서기관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영 시정요구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기다리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지원과장 김양수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허영 위원 아니, 저……

○소위원장 구자근 예.

○허영 위원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참 오랜 기간 열정과 성심을 다해서 역할을 해서 이제 곧 진상규명위원회의 소명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고맙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지원과장 김양수 예,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구자근 안도걸 위원님.

○안도걸 위원 진상위원회에서 소임을 다 마쳤고 거기에서 정부가 해야 될 이행과제에 대한 것을 제시를 했고 정부가 그 이행계획을 수립해서 또 국회에 보고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남아 있지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지원과장 김양수 예, 아직까지 11개의 권고 이행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 이행작업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건데 그것은 원만히 진행되고 있습니까?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지원과장 김양수 오늘도 총리실 가서 좀 협의를 하고 오기는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그 관할이 정해지지는 않았고 지금 현재 위원회에서 각 부처에 해당 과제를 배분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한번 받아 보고 그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러니까 6개 부처·기관, 6개 부처나 6개 기관이지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지원과장 김양수 예.

○안도걸 위원 거기 다 지금 개별적으로 찾아다니시면서 요구를 하셨습니까?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지원과장 김양수 예, 지금 저희들이 전자문서가 안 돼서 우편 발송을 하고 오늘하고 내일 우편 발송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도걸 위원 예, 마무리 작업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구자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를 우리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관계관계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곽규택 구자근 박수민 안도걸 이용선 장철민 허영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전문위원 정대영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사무차장 동승철

감사원

사무총장 최달영

기획조정실장 황해식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김종문

총무기획관 손동균

기획재정부

제2차관 김윤상

재정관리국장 안상열

교육부

차관 오석환

기획조정실장 박성민

통일부

차관 김수경

기획조정실장 오대석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변필건

검찰국장 송강

국방부

차관 김선호

기획조정실장 이영빈

계획예산관 신태복

국가보훈부

차관 이희완

기획조정실장 김주용

정책기획관 박진수

보훈예우정책관 임종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이재승

기획조정관 이형석

법제처

차장 김창범

기획조정관 최영찬

재외동포청

차장 변철환

기획조정관 오진희

병무청

차장 최규석

기획조정관 김용무

방위사업청

차장 강환석

기획조정관 홍미루

재외동포협력센터

경영기획실장 이미경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조홍선

기획조정관 진성복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겸중앙행정심판위원장겸사무처장 박종민

기획조정실장 안준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
기획조정관 유영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최장혁
사무처장 이정렬
기획조정관 고은영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지원과장 김양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장영현
경영지원본부장 한영민

○법원측 참석자

법원행정처
차장 배형원
기획조정실장 윤성식

○헌법재판소측 참석자

헌법재판소사무처
기획조정실장 하정수
기획재정국장 최혁